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의안
번호 2246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 제안경위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¹⁾ 및 제36조의2조²⁾에 의한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³⁾에 따라 11월 9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보도자료⁴⁾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및 세수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7% 증가하여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지원강화,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등 안전관리사업,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인 강당겸체육관 증축, 현장 수요가 높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발표(2017.11.10.)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① 혁신미래교육 현장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로 설정함

2. 재정운용 규모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1,02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8조 1,477억원) 대비 11.7%, 9,55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1〉 2018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9,102,764	8,147,725	955,039	11.7

3.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 9,550억원이 증액 편성된 9조 1,027억원임
- 이전수입은 2017년도 대비 12.8%, 9,472억원이 증가한 8조 3,504억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2,250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5%, 7,404억원이 증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조 1,033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6.5%, 1,887억원이 증가한 것임
- 기타 이전수입은 2017년도 대비 181억원이 증가한 22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학교시설 증축 및 대수선 협약 기부채납금⁵⁾ 148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지원금 47억원 등임

○ 자체수입은 2017년도 대비 0.9%, 15억원 증가된 1,636억원으로

- 고교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억원, 자산매각대 등 자산수입 264억원, 사용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54억원, 이자수입 41억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51억원 등임

○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발행규모를 통보⁶⁾하였으나,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서울시 법정전입금(5,885억원) 등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취소하고

5) 사업별 설명자료 p.21

-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고일초 및 가락초 교실 부족 문제 해결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조합 납부 기부채납금(고일초 118억원, 가락초 30억원)

6) 2017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41, 2017.03.27.)

- 지방채 발행 승인액 : 1,334억 4,000만원

이를 2018년도로 이월⁷⁾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2017년도 대비 △50.7%, △1,370억원이 감소된 1,334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 전년도 이월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4,551억원을 편성한 것임

7)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1호, 2017.6.19.)

V. 지방채무 관리 및 운용

1. 지방채의 관리

○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월승인을 받아(매년 12월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 가능

〈표 2-2〉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전 년 대 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100.0	955,039	11.7		
이전수입	계	8,350,489	91.7	7,403,238	90.9	947,251	12.8		
	중정이수	양부전입	소 계	5,225,012	57.4	4,484,598	55.0	740,414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98,936	50.6	4,464,378 ^{주1}	54.8	134,558	3.0	
		국조보조금	24,757	0.3	20,220	0.2	4,537	22.4	
		특별회계금	601,319	6.6	0	0.0	601,319	순증	
	지자단이수	방치체전입	소 계	3,103,351	34.1	2,914,634	35.8	188,717	6.5
		법정전입금	2,969,326	32.6	2,757,204	33.8	212,122	7.7	
		학교용지부담금	9,056	0.1	48,181	0.6	△39,125	△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7,153	1.0	78,516	0.9	8,637	11.0	
		교육급여금	12,000	0.1	13,083	0.2	△1,083	△8.3	
		비법입정금	25,816	0.3	17,650	0.2	8,166	46.3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22,126	0.2	4,006	0.0	18,120	452.3	
	자체수입	계	163,639	1.8	162,107	2.0	1,532	0.9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54	1.2	122,642	1.5	△10,088	△8.2	
행정활동수입		5,453	0.1	5,176	0.1	277	5.4		
자산수입		26,418	0.3	13,718	0.2	12,700	92.6		
이자수입		4,108	0.0	4,066	0.0	42	1.0		
금융자산회수		0	0.0	0	0.0	0	0.0		
기타수입		15,106	0.2	16,505	0.2	△1,399	△8.5		
지방교육채	133,440	1.5	270,516	3.3	△137,076	△50.7			
전년도이월금	455,195	5.0	311,864	3.8	143,332	46.0			

주1.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특별회계지원금으로 분리 편성한 누리과정지원금 588,440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음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조 1,02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7%, 9,5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100.0	955,039	11.7	
인 건 비	계	5,486,408	60.3	5,318,885	65.3	167,523	3.1	
	공 무 원	4,371,215	48.0	4,264,487	52.3	106,728	2.5	
	사 립 학 교	1,115,193	12.3	1,054,398	12.9	60,795	5.8	
경 상 비	계	848,443	9.3	791,368	9.7	57,075	7.2	
	기 관 운 영 비	43,235	0.5	40,881	0.5	2,354	5.8	
	학 교 운 영 비	소 계	805,208	8.8	750,487	9.2	54,721	7.3
		공 립	737,763	8.1	682,228	8.4	55,535	8.1
		사 립	67,445	0.7	68,259	0.8	△814	△1.2
사 업 비	계	2,615,198	28.7	1,835,029	22.5	780,169	42.5	
	교 육 사 업 비	1,945,114	21.4	1,383,571	17.0	561,543	40.6	
	시 설 사 업 비	670,084	7.4	451,458	5.5	218,626	48.4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43,524	1.6	186,121	2.3	△42,597	△22.9	
예 비 비		9,191	0.1	16,322	0.2	△7,131	△43.7	

-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60.3%로 2018년도에는 5조 4,86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인건비는 2017년도 대비 3.1%, 1,675억원이 증액된 바, 공·사립 교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인상 및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경상비**는 세출예산의 9.3%로 2018년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7.2%, 570억원을 증액한 8,48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공공요금인상 및 시설관리용역비 인상 등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인건비에 편성하였던 특정업무경비를 교육부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비로 이동 편성⁸⁾하여 2017년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43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 2017년도 보다 7.3%, 547억원이 증액된 8,052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증액분 482억원, 2018학년도 신설학교(유18, 초1, 중1, 각종1) 운영비 40억원, 유치원 교실 청소용역비지원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8)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7.9.) p.4.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담당분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인건비에서 삭제

※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 “본청운영”, “교육지원청운영” 등에 편성 필요

○ **사업비**는 2017년도 보다 42.5%, 7,801억원이 증액된 2조 6,15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1조 9,451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0.6%, 5,615억원이 증액된 것이나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중 일부⁹⁾만 편성한 바 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지원금 소요액 전액 6,016억원을 편성한 것은 물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 1,353억원과 기타 사업비 증액분 60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4〉 교육사업비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A-B)	주요 증감사업 ^{주1}
합 계	1,945,114	1,383,571	561,543	
인 적 자 원 운 용	25,057	21,343	3,714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446,436	340,323	106,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혁신기획운영 187억원 ○ 특성화고지원 132억원 ○ 매력적인직업계고육성(특교) 74억원 ○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특교포함) 51억원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33억원 ○ 메이커교육운영(시전입금포함) 28억원 ○ 미래형학교환경조성(특교) 28억원 ○ EBS수능강의운영지원(특교) 27억원 ○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25억원 ○ 협력종합예술활동 24억원 ○ 기초학력향상지원(특교) 23억원 ○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21억원 ○ 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102억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 △17억원 ○ 창의융합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 △13억원

주1.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및 증감액 기준

9)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총 소요액(5,918억원)의 39.9%(2,363억원) 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A-B)	주요 증감사업 ^{주1}
교육복지 지 원	1,262,435	903,735	358,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5세아보육료 2,253억원 ○ 만3~5세아유아학비 1,399억원 ○ 무상급식 190억원 ○ 교육급여지원 △132억원 ○ 특성화고장학금지원(특교) △45억원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19,514	5,276	14,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98억원 ○ 학교흡연예방교육(국고보조금) 45억원 ○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국고포함) 40억원
평 생 교 육	25,120	23,357	1,7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시전입금) 7억원 ○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6억원
직 업 교 육	702	913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2억원
교 육 행 정 일 반	165,851	88,624	77,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 288억원 ○ 시스템운영 134억원 ○ 기타기금적립 180억원 ○ 학교시설관리용역 108억원 ○ 공유재산취득 △36억원 ○ 학교개방에따른운영비지원 △30억원

주 1.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및 증감액 기준

- **시설사업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8.4%, 2,186억원이 증액된 6,70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신증설**은 2017년도 대비 66.3%, 644억원(학교신설 374억원, 교실증축 270억원)이 증액된 1,618억원(22개교 신설비 1,240억원, 30개교 399실 증축비 37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시설증개축**은 2017년도 대비 112.9%, 448억원이 증액된 84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68개교의 강당겸체육관 증

축사업비 755억원과 13개교의 특별교실·연결통로 등의 증축사업비 89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017년도 대비 21.5%, 576억원이 증액된 3,25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안전관리(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918억원, 노후 화장실개선 275억원, 창호개선 267억원, 전기시설개선(LED임차, 방송시설 등 포함) 265억원, 외벽개선 210억원 및 냉난방개선 186억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2017년도 대비 124.3%, 461억원이 증액된 83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비 478억원, 노후급식시설보수비 122억원 및 노후조리기구교체·확충비 23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 행정기관(도서관 포함)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17년도 대비 59.0%, 55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 증축비 20억원, 동작관악Wee센터 이전 신축비 19억원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¹⁰⁾ 사업비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10) 현 교육시설사업관리본부 부지(용산구 후암동 168, 舊 수도여고 부지)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를 건립함에 따라 공사 착공(2019년 9월 예정) 이전에 교육시설관리사업본부를 이전하기 위함

〈표 2-5〉 시설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670,084	100.0	451,458	100.0	218,626	48.4
학 교 신 증 설	161,823	24.2	97,327	21.6	64,496	66.3
학 교 시 설 증 개 축	84,502	12.6	39,689	8.8	44,813	112.9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325,485	48.6	267,874	59.3	57,611	21.5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83,257	12.4	37,124	8.2	46,133	124.3
교 육 행 정 기 관 소 계	15,017	2.2	9,444	2.1	5,573	59.0
본 청 시 설 관 리	130	0.0	239	0.1	△109	△45.6
교 육 지 원 청 시 설 관 리	5,483	0.8	2,794	0.6	2,689	96.2
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9,404	1.4	6,411	1.4	2,993	46.7

○ **지방교육채상환**은 2017년도 대비 △52.4%, △429억원이 감액된 390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2014년~2016년 발행한 지방교육채¹¹⁾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기 위해 389억원을 계상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일시차입금상환 8,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민간투자사업상환(BTL)**은 2017년도 대비 0.4%, 3억원이 증액된 1,04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된 학교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11) 2014년~2016년 발행 지방교육채 상환방법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2020년부터 원금상환 기간 도래)

- **예비비 및 기타**는 2017년도 보다 $\Delta 43.7\%$, $\Delta 71$ 억원이 감액된 9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2017년도의 경우 LED조명기구 렌탈 설치사업비 85억원이 내부유보금에 포함되어 예비비 편성 규모가 일시 증액된 특수성이 있는 바, 2017년도 특수사례를 제외할 경우 2018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2017년도 당초 제출안 보다 14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Ⅲ.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중앙정부 이전수입

①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¹²⁾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4조 5,203억원¹³⁾임

〈표 3-1〉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 육 부 재원규모 (A)	2018년도 예정교부액(B)		2017년도 예정 교부액(C) ^{주1}	2017년도 확정 교부액	증감액 (D=B-C)	
			비율 (B/A)				비율 (D/C)
보 통 교부금	47,712,122	4,520,346	9.5	3,839,743	4,133,147	680,603	17.7

주1.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비교를 위하여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산정된 7,713억원 중 누리과정지원(5,88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으로 합하여 기재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13)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706, 2017.10.20.)

- 2018년도 예정교부액(4조 5,203억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¹⁴⁾ 47조 7,121억원의 9.5%이며, 2017년도 3조 8,397억원 보다 6,806억원(17.7%) 증액된 것임

○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을 검토하면, 2018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2017년도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은 1조 1,026억원(14.5%)증가한 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4,220억원(11.2%)만 증가하여 2017년도 보다 미달액¹⁵⁾ 규모가 커져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3-2〉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 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A-B)
2018(A)	8,727,921	4,207,574	4,520,346
2017(B)	7,625,310	3,785,568	3,839,742
비교증감 (C=A-B)	1,102,611	422,006	680,604
증감률 (C/B)	14.5	11.2	17.7

- 기준재정수요액은 8조 7,279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조 1,026억원(14.5%)이 증가된 것임

14) 2018년도 보통교부금 재원 : 내국세 교부금(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분(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단위 :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 20.27%)			교육세분(특별회계 전출금 제외)(B)	보통교부금 교부액 (A+B)
보통교부금(96%)(A)	특별교부금(4%)	계		
442,984	18,458	461,442	34,137	477,121

※ 출처 :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706, 2017.10.19.)

15) 미달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교직원인건비는 5조 7,934억원으로 처우개선율(2.6%), 호봉승급분(1.83%) 등을 적용하여 2017년도 보다 2,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학교교육과정운영비는 1조 3,722억원으로 표준교육비 적용률 인상¹⁶⁾과 “학생수×단가”를 적용하는 교육과정운영비의 단가 인상(11.5만원→15.5만원) 등으로 2017년 보다 2,165억원이 증가한 것임
- 교육복지지원비는 지역간·계층간 균형교육비 증액(5,804억원)에 따라 599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시설비는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립학교 신설·증설비 증액(각각 3,601억원, 432억원)에 따라 4,033억원이 증가한 것임
- 지방채 조기상환지원은 금년도 1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¹⁷⁾에 따라 교육부의 추가(조기) 상환 통보 없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지방교육채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10억원¹⁸⁾을 순증한 것임

16) 2018년도 표준교육비 적용률 인상 내역 : 학교 86%→100%, 학급 86%→100%, 학생 94%→100%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5호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5.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액	교육·학예 사무 관련 지방채의 전년도 상환액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채 조기 상환액 × 2.5%	

부칙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8) 2013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436억 9,400만원 × 2.5% = 10억 9,200만원

- 유아교육비는 617억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월 40만원→46만원) 및 유치원 교원역량 지원비 단가 인상 (8,970천원→14,564천원)으로 2017년도 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것임
- 기준재정수입액은 4조 2,075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220억원 (11.2%) 증가된 바, 전전년도(2016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2013~2016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어 2016년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¹⁹⁾도 증가 (4,128억원)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19)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의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 7개 세목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시도세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 담배소비세 전입금 :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표 3-3〉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감내역		
					증감액 (A-B)	증감률	
교부할 금액 ① - ②		45,203	38,397	41,331	6,806	17.7	
	보통교부금	45,203	38,397	41,331	6,806	17.7	
	교부금 보전 지방채	0	2,705	1,334	△2,705	△100.0	
기준 재정 수요 ①	계	87,279	76,253	79,223	11,026	14.5	
	교직원인건비	57,934	55,497	56,197	2,437	4.4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5,887	13,722	14,041	2,165	15.8	
	교육행정비	1,410	1,169	1,168	241	20.6	
	교육복지지원비	1,942	1,343	1,634	599	44.6	
	학교시설비	5,385	1,352	2,706	4,033	298.3	
	유아교육비	617	511	726	106	20.7	
	방과후학교사업비	1,115	1,119	1,091	△4	△0.4	
	재정결함보전	1,951	1,205	1,175	746	61.9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0	0	0	0	0.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33	0	0	33	순증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138	230	230	△92	△40.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	6	6	△1	△16.7	
	지방채 조기상환지원	10	0	0	10	순증	
	중등직업교육비증 확대	114	0	146	114	순증	
정정교부액 ^{주1}	703	99	98	604	610.1		
기준 재정 수입 ②	계	42,075	37,855	37,891	4,220	11.2	
	지방 자치 단체 법정 전입금	소 계	38,024	33,896	33,896	4,128	12.2
		지방교육세	18,178	16,233	16,233	1,945	12.0
		시도세	15,770	15,029	15,029	741	4.9
		담배소비세	4,076	2,634	2,634	1,442	54.8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	2,941	3,173	3,173	△232	△7.3	
	학교용지부담금	106	0	0	106	순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01	785	819	216	27.5	

주1. 정정교부액(703억원) 내역

- '17년도 정부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배분방식 변경에 따른 정정액 반영 : 520억원
- '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특성화고 관련) 정정액 반영 : 47억원
- 교육환경개선비 교사 연면적 산정 오류에 따른 정정교부액의 1/3 반영 : 136억원

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²⁰⁾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서 2018년도 예정교부액 6,013억원²¹⁾을 편성한 것임

〈표 3-4〉 2018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 입 금 재원규모 (A)	2018년도 예정교부액(B)		2017년도 예정교부액(C) ^취	증감액 (D=B-C)	
			비율 (B/A)			비율 (D/C)
계	3,861,105	601,319	15.6	588,440	12,879	2.2
유 치 원	1,810,298	233,775	12.9	234,789	△1,014	△0.4
어린이집	2,050,807	367,544	17.9	353,651	13,893	3.9

주1. 2018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예정교부와 비교를 위하여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산정된 누리과정지원(5,885억원)을 기재

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4. 생략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3. 생략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제10조 생략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재원(3조 8,611억원)의 15.6%(6,013억원)

- 2017년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 중 일부는 보통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분담하였으나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을 국고에서 분담²²⁾할 예정임

○ 따라서, 2018년도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이 국고로 분담됨으로써 보통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사업의 재원분담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한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몰 기한(2017~2019년)²³⁾ 도래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사업 재원 분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요구안 등을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2) 중앙정부 누리과정 지원 재원별(교육세 및 국고) 분담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안			
	총소요 예산(A)	교육세 전입	국고 전입(B)	국고전입 비율(B/A)	총소요 예산(A)	교육세 전입	국고 전입(B)	국고전입 비율(B/A)
합 계	39,409	30,809	8,600	21.8	38,927	18,341	20,586	52.9
유 치 원	18,533	18,533	0	0.0	18,342	18,341	0	0.0
어린이집	20,876	12,276	8,600	41.2	20,586	0	20,586	100.0

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특별교부금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3항24)에서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3호25)에 따라 ① 국가시책사업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60%), ②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30%), ③ 재해대책 지원(특별교부금 재원의 10%) 으로 구분되고 있음

〈표 3-5〉 2018년도 특별교부금 교육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금 재원(A)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	국가지책 (A×60%)	지역현안 (A×30%)	재해대책 (A×10%)
1,845,768	1,107,461	553,730	184,577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交付金"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지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121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78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세입 편성하여 제출한 바,

〈표 3-6〉 특별교부금 본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	2017	2016	2015	2014
본예산안 편성액	78,590	36,195	0	0	0

-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 시행되는 특별교부금을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을 위해 교육청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학교별 교부 예정액을 사전에 안내하여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회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목적지정 지원금²⁶⁾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²⁷⁾한 것임
- 다만, 연도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교부액의 차이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증·감 조정²⁸⁾한 사례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6) 목적지정 지원금 : 국가 또는 시·도 등 외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통상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사용)

27)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 2018년도 본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재원구분	사업수	본예산안 편성액	비고
합 계	145	145,288	교육급여(30,000백만원 포함)
특별교부금	121	78,590	
국고보조금	4	24,757	교육급여(18,000백만원 포함)
자치단체전입	16	36,565	교육급여(12,000백만원 포함)
기타지원금 등	4	5,376	

※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p.138) 참고

28) 2017년도 목적지정지원금 본예산 반영 41개 사업 중 11개 사업(26.8%) 증감 조정

④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분 180억원 등 총 4개 사업, 247억원임

〈표 3-7〉 2018년도 국고보조금 본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안 편성액	비고 (편성근거)
합 계		24,756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지원	18,000	교육부 가내시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63	에듀파인 가내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건강과	초등스포츠강사지원	1,794	에듀파인 가내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건강과	학교흡연예방교육	4,599	에듀파인 가내시 (보건복지부)

- 교육급여지원(180억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²⁹⁾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에 따라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일부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을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차등하여 분담한 것인 바, 교육부가 2018년도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국가 및 시·군·구 부담 총액 중 60%인 180억원을 내시³⁰⁾하여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전국소년체육대회**(3억 6,300만원) · **초등스포츠강사지원**(17억 9,400만원) 및 **학교흡연예방교육**(45억 9,9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하는 것이나,
- 예산안 제출 후 11월말 현재까지 2018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없으나, 금년도 사업계획에 근거한 가내시액을 바탕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실교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내역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0) 2018년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 통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5927, 2017.09.14.)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3조 1,033억원으로 2017년도(2조 9,146억원) 대비 6.5%, 1,887억원 증가된 것임

〈표 3-8〉 2018년도 서울시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103,351	2,914,634	188,717	6.5
법 정 이 전 수 입	3,077,535	2,896,984	180,551	6.2
지 방 세 소 계	2,969,326	2,757,204	212,122	7.7
지방교육세(100%)	1,458,184	1,361,334	96,850	7.1
시 도 세 (1 0 %)	1,230,170	1,110,455	119,715	10.8
담배소비세(45%)	280,972	285,415	△4,443	△1.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9,056	48,181	△39,125	△81.2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87,153	78,516	8,637	11.0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2,000	13,083	△1,083	△8.3
비 법 정 이 전 수 입	25,816	17,650	8,166	46.3
공공도서관 운영비	1,250	4,177	△2,927	△70.1
조례상전입금(14개 사업)	24,566	13,473	11,093	82.3

- 서울시가 교육청에 통보³¹⁾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에 따라 교육청은 지방세 수입을 2017년도 대비 6.5%, 1,887억원 증가한 3조 1,033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31)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서울시 교육정책과-6015, 2017.11.1.)

- 2018년도의 경우, 서울시의 시세 세입 증액편성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2017년도(1조 3,613억원) 대비 7.1% 증가한 1조 4,58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세(지방세 전입)**는 10.8% 증가한 1조 2,3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6% 감소한 2,809억원을 편성함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소요경비 중 시·도가 부담³²⁾하는 것으로 5개교(가재울초, 금나래초, 새솔초, 천이초, 공향초)의 토지매입비 50%³³⁾에 해당하는 90억원을 반영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주택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산출된 안분액³⁴⁾ 871억원을 편성한 것임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 중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부담분³⁵⁾ 120억원을 편성한 것임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1을 각각 부담한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가재울초	금나래초	새솔초	가칭천이초	공향고
편성액	9,056	△193	18	357	2,366	6,508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지방소비세율 100분의 11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그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납입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7-2호) : 2017.2.1.~2018.1.31. 납입관리자를 제주도특별도지사로 지정

35) 교육급여 재원분담 : 국고보조금 60%, 광역자치단체 28%, 기초자치단체 12%

-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³⁶⁾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12억원)와 조례상 전출금(245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³⁷⁾에 따라 보통세의 0.4%를 적용하여 510억원의 교육지원금(조례상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나³⁸⁾,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 조례상 전출금 245억을 편성한 바, 이는 서울시가 교육지원금으로 내시한 사업 중 대상교가 확정되지 않아 편성목이 변경³⁹⁾될 수 있는 일부 사업⁴⁰⁾을 제외하고 편성 가능한 사업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조례상 전출금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지원대상)
합 계			24,566	
1	교육혁신과	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0개교
2	교육혁신과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250	10개교
3	교육혁신과	혁신학교운영	1,500	200개교
4	유아교육과	에듀케어운영확대	975	135개 유치원

36)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7)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8)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서울시 교육정책과-6015, 2017.11.01.)

39) 공립학교 : 시설비 또는 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 학교회계전출금

40) 화장실리모델링, 노후냉난방기개선 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지원대상)
5	초 등 교 육 과	학습준비물지원	5,265	공립초등학생 405천명
6	중 등 교 육 과	서울영어마을참가비지원	1,779	13,800명
7	중 등 교 육 과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1,512	36개교
8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환경조성	100	60명
9	평 생 교 육 과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700	22개 도서관
10	학생생활교육과	학교CCTV 교체	1,535	384개교
11	체 육 건 강 과	노후급식시설개보수	6,000	123개교
12	교육시설안전과	아름다운우리학교만들기	750	10개교
13	교육시설안전과	친환경운동장조성지원	400	2개교
1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에너지절감프로젝트	2,800	10개교

- 아울러, 2016년 5월 조례 개정⁴¹⁾으로 조례상 전출금 지원규모가 보통세의 0.6% 이내로 개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상 보통세의 0.6% 이내를 0.6% 이상으로 개정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0〉 조례상 전출금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8	2017	2016
조례상 기준	보통세의 0.6%	보통세의 0.6%	보통세의 0.4%
편 성 액	510 (보통세의 0.4%)	567 (보통세의 0.5%)	471 (보통세의 0.4%)

4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비(12억원)의 경우, 서울시 보조 예산액과 교육청 세입 예산액과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서울시에서 당초 재원부족을 사유로 12억원 배정 통보를 받고 이를 교육청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⁴²⁾에는 4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두 기관의 소통이 부족했던 사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660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 4,177,000천원)

(3)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2017년도(1,621억원) 대비 0.9%, 15억원이 증액된 1,636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1〉 자체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163,639	162,107	1,532	0.9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54	122,642	△10,088	△5.2
행정활동수입	5,453	5,176	277	5.4
자산수입	26,418	13,718	12,700	92.6
이자수입	4,108	4,066	42	1.0
금융자산회수	0	0	0	0.0
기타수입	15,106	16,505	△1,399	△8.5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12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 입학금 면제⁴³⁾ 등에 따라 2017년도(1,226억원) 대비 △5.2%, △10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향후 감소 추세⁴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3)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 제2조(징수금액)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44) 교육비특별회계 교수·학습활동 수입 전망(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27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76	112,900	97,290	93,146	89,753	101,133
증가율		0.3	△13.8	△4.3	△3.6	△5.5

- **자산수입**은 2017년도(137억원)보다 92.6%, 127억원이 증가한 264억원으로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중 염리3구역 토지(109억원), 수색6구역(24억원), 수색7구역(50억원) 등 공유재산 처분대금이 127억원 증가한 것임

- **이자수입**은 41억원을 편성한 바, 2017년도 본예산(40억원) 대비 1.0%, 4,2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교육청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어 이전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세입구조 상 자체수입 확대는 한계가 있으나,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 2.0%에서 2018년도 1.8%로 줄어들어 의존적 재정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교육채

- 2018년도 지방교육채 편성액은 1,334억원으로 총 세입예산(9조 1,027억원)의 1.5%임

〈표 3-12〉 지방교육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133,400 (1.5)	270,516 (3.3)	△137,076	△50.7

※ ()는 총 세입예산액에 대한 지방교육채 비율

- 2018년도 지방교육채 편성 규모는 금년도(2,705억원) 보다 △ 50.7%, △1,370억원 감소한 바,
 - 2018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총 재원 규모가 2017년도 비해 대폭 증가⁴⁵⁾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2018년도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교육채⁴⁶⁾ 발행은 없으며,
 - 2018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부가 통보한 지방교육채를 2017년도에 발행하지 않고 이월하여 2018년도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세입 편성 후 전액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될 것으로 사료됨

45) 18조 6,279억원 ('17년도 39조 843억원 → '18년도 47조 7,122억원)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 교육부에서 승인하고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5) 순세계잉여금

-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4,551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추정액 4,551억원 전액을 반영한 것임

〈표 3-13〉 2017회계연도 결산전망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수납률) (②/①)	세출결산액 ③ (집행률) (③/①)	잉여금 차인잔액 ②-③	기 채 상	존 부 환	명 시 이 월 액	사 고 이 월 액	계 속 비	보 조 금 집 산 액	순 세 계 잉 여 금
9,814,199	10,010,482 (102.0)	9,253,161 (95.5)	757,321	-	100,505	201,621	-	-	455,195	

-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4,551억원)은 2017년도에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의 일부만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3,049억원)⁴⁷⁾ 및 기타 사업비 불용 예상액을 전망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A)	전년대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순증)(C)	
		증감액	증감률	비율(B/A)		비율(B/A)	
2016	505,442	186,338	58.4	311,864	61.7	193,578	38.3
2015	319,104	193,407	153.9	187,428	58.7	131,676	41.3
2014	125,696	37,203	42.0	0	0.0	125,696	100.0

47) 지방교육채상환사업 결산 전망

(단위 : 백만원)

본예산(A)	추경증액(B)	합 계 (C=A+B)	2017년도 상환(예정)액(D)	불 용 액 (C-D)
43,694	500,828	544,522	239,536	304,986

2.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인건비

① 인건비 규모

- 2018년도 공·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1%, 1,675억원을 증액 편성한 5조 4,864억원으로 세출예산(9조 1,027억원)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5〉 인건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A-B)	증감률
합 계	5,486,408	5,318,885	5,365,718	167,523	3.1
교 원 인 건 비	3,597,656	3,525,363	3,566,190	72,293	2.1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2,136	51,288	51,288	848	1.7
지방공무원 인건비	466,356	459,687	459,687	6,669	1.5
계약제교원 인건비	245,515	222,023	222,023	23,492	10.6
계약제직원 인건비	9,552	6,126	6,126	3,426	55.9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 중·고·특수)	1,115,193	1,054,398	1,060,405	60,796	5.8

- **공무원(교원·교육전문직원·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인상률(2.6%)을 반영하고, 교원 정원 증가(104명) 및 각종 수당 인상⁴⁸⁾으로 인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48) 주요 수당 변경 내용

- **계약제교원 인건비**⁴⁹⁾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인원을 103명 증원(4,361명→4,464명)하고, 봉급 인상률(2.6%)을 반영함으로써 퇴직금·법정부담금·맞춤형복지비도 증가하였고, 시간강사 단가 인상(17천원→22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6%, 234억원이 증액된 2,45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대체 직원 인건비와 교육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5.9%, 34억원이 증액된 9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6〉 계약제직원인건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비 고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552	6,126	3,426	55.9	
지방공무원 대체직원 인건비	2,582	2,060	522	25.3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3,223	445	2,768	608.4	
장애인 고용 의무 채운 영	3,747	3,611	136	3.8	

- 지방공무원 대체 직원 인건비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인원(80명)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 생활임금 인상분⁵⁰⁾을 반영

- 가족수당 인상(둘째 월 4만원, 셋째 월 7만원 인상) / 교원사서수당 신설(월 2만원)
- 육아휴직수당 인상(월 50~20만원) / 8·9급 직급보조비 인상(월 2만원) 등

49) 계약제교원 인건비 : 교원의 휴직, 휴가, 출산, 파견, 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자 정규 교원을 대신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50) 2018년도 생활임금 인상분 : 시간당 1,960원(8,040원→10,000원)

함으로써 퇴직금·법정부담금 등도 증가하여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5.3%, 5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608.4%, 2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인상(350P→450P)⁵¹⁾과 계약제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신설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10억원)⁵²⁾ 및 최저임금 보전(14억원)⁵³⁾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됨
-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교직원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봉급 인상률(2.6%) 및 각종 수당 인상을 반영하고, 명예퇴직 산정 교원 수 107명(186명→293명) 증가 등에 따른 재정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학생수 감소 및 입학금 면제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2017년도 보다 5.8%, 607억원이 증액된 1조 1,151억원을 편성한 것임

51) 2017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인상된 맞춤형복지포인트 반영

5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7.07.20.)

- 배경 :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개선 추진 필요 등

- 주요내용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및 향후 2년 이상 예상)

▸ 기간제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전환 대상 결정

▸ 파견·용역 :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대상, 방식, 시기 결정

- 서울시교육청 추진경과

▸ 2017. 8월~9월 : 실태조사

▸ 2017. 9월 : 교육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공통 가이드 라인 제시

▸ 2017. 9월~10월 :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회의

▸ 2017. 9월 : 고용노동부에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요청

▸ 2017. 10월 :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파견·용역 노사협의체 구성 중

53)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적용에 따라 2018년에 한해 월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금액 보전

② 교원 명예퇴직의 수요 반영 (사업별 설명자료 p.329, 1007)

- 2018년도 공·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편성액은 835명분 817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5.3%, 107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17〉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A-B)	증감률
합 계	인 원	835	728	107	14.7
	금 액	81,734	70,891	10,843	15.3
공립교원	인 원	542	542	0	0.0
	금 액	57,070	55,478	1,592	2.9
사립교원	인 원	293	186	107	57.5
	금 액	24,664	15,413	9,251	60.0

-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⁵⁴⁾하였음에도 공립 교원의 경우, 수요조사 인원(906명) 보다 364명 적은 542명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반영하여 제출한 바
- 최근 3년간 사전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많았고⁵⁵⁾

54) 2018년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 현황 제출(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12257, 2017.9.7.)

(단위 : 명)

구 분	공립교원	사립교원	계
수요조사 인원(A)	906	293	1,199
예산편성 인원(B)	542	293	835
미반영인원(A-B)	364	0	364

55) 최근 3년간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수요조사	신청인원	확정인원
계	728	1,231	1,231	1,424	2,026	1,455	·	4,054	2,022
공립	542	912	912	1,232	1,549	1,128	·	3,217	1,465
사립	186	319	319	192	477	327	·	828	557

※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 상반기 전액 소진으로 제1회 추경에서 468억원 증액하여 하반기 명퇴 시행

실제 금년도의 경우에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당초 편성인원을 초과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245억원) 및 추경예산(468억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음

- 아울러 최소 교원 임용 절벽⁵⁶⁾ 및 미발령 합격자 적체 해소⁵⁷⁾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신청자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6) 846명('17년 선발인원) → 105명('18년 예고인원) → 385명('18년 선발 확정인원)

57) '임용절벽' 대신 '발령절벽'... 서울 신규선발 385명, 미발령 850명(아시아경제, 2017.09.13.)

- 지난해 임용시험 합격자 813명 전원 미발령 대기 상태이며 재작년 합격자 중 40명 가량은 미발령 대기 상태임

(2)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7.3%, 547억원이 증액된 8,05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경우, 2017년도 대비 8.1%, 555억원이 증액된 7,377억원을 편성하고,
-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대비 △1.2%, △8억원이 감액된 674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3-18〉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805,208	750,487	54,721	7.3
공 립	소 계	737,763	682,228	55,535	8.1
	학 교 기 본 운 영 비	583,328	562,109	21,219	3.8
	학 교 기 타 운 영 비	97,178	91,471	5,707	6.2
	교 육 공 무 직 원 비 처 우 개 선 비	57,257	28,649	28,608	99.9
사 립	소 계	67,445	68,259	△814	△1.2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3,764	64,644	△880	△1.4
	교 원 연 구 비	3,681	3,615	66	1.8

①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311)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5,833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9〉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

(단위 : 백만원)

<p>학교기본운영비</p>	=	<p>○ 기준재정수요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경상운영비^{주1} · 개별경상운영비^{주2} 	-	<p>○ 기준재정수입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일부^{주3} · 학교운영지원비^{주4} · 순세계잉여금 일부^{주5}
-----------------------	---	---	---	--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2018년도 예산안	583,328	520,365	93,961	614,326	30,998
2017년도 본예산	562,109	502,834	93,486	596,320	34,211
증 감	21,219	17,531	475	18,006	△3,213

- 주1. 공통경상운영비 : 적정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학교별 경비
- 주2. 개별경상운영비 :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 주3. 사용료 일부 : 전년도 사용료를 4개 영역(①수영장, ②복합화주차장, ③체육관·잔디운동장, ④매점등 기타시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합산
- 주4.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의 95%
- 주5. 순세계잉여금 일부 : 순세계잉여금 규모별 30~60%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인원 증가, 신설학교 운영비 반영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180억원 증가하였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등 기준재정수입액은 △32억원 감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은 2017년도 보다 3.8%, 212억원이 증가된 것임

-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도 2017년도 대비 2.0%, 900만원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공립 1교당 연간 4억 8,800만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검토됨

〈표 3-20〉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583,328	562,109	517,845
지 원 학 교 수		1,195	1,174	1,160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488	479	446
증감규모	증감액	9	33	
	증감률	2.0	7.2	

② 학교기타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314)

-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정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 2017년도(914억원) 대비 6.2%, 57억원이 증액된 971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3-21〉 학교기타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항목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계		97,177	91,471	5,706	6.2
기존항목	2017년 기타운영비 항목(26개)	95,713	86,612	4,242	4.6
전환항목 ^{주1}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729	0	729	순증
신규	유아교육지원(교실청소용역비)	735	0	735	순증

주1. 목적사업비→학교기타운영비

- 주된 증가요인은 2018년도 학교기타운영비 기존 세부항목 중 장애학생지원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및 사립 영양사·전임코치·특성화고실습실무사 등의 인건비 인상으로 42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전환(목적사업비→학교기타운영비) 편성되고 유아교육지원(교실청소용역비) 신규 편성되어 14억원이 증액된 것임

③ **교육공무원 처우개선비** (사업별 설명자료 p.468)

- 교육공무원 처우개선비는 57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286억원) 대비 99.9%, 28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22〉 교육공무원 처우개선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7,257	28,648	30,128	28,609	99.9
교육공무원 대체 인건비	995	805	805	190	23.6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수당	32,491	22,016	22,016	10,475	47.6
맞춤형복지	8,010	5,827	7,307	2,183	37.5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10,075	0	0	10,075	순증
최저임금보전	5,685	0	0	5,685	순증

-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수당** 중 가족수당⁵⁸⁾ 및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변경⁵⁹⁾ 등으로 2017년도(220억원) 대비 47.6%, 104억원 증액된 324억원을 편성한 것임
- **맞춤형복지**는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상향(350P→450P)⁶⁰⁾으로 인해 증액 편성한 것이며,

58) 가족수당 : 둘째 자녀 수당 월4만원(월2만원→월6만원) 인상

59) 장기근무가산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 4년차부터 월5만원 / 급간2만원 / 상한35만원 → 2년차부터 월3만원 / 급간3만원 / 상한60만원

60)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상향(350P→450P) 적용을 위해 증액 편성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⁶¹⁾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전 및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최저임금 보전** 사업은 2017년 임금협약⁶²⁾에 따라 2018년에 한해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월243시간→월209시간)⁶³⁾으로 기존 월 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보전⁶⁴⁾하기 위해 56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6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정부관계부처 합동, 2017.07.20.)
 - 배경 :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개선 추진 필요 등
 - 주요내용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및 향후 2년 이상 예상)
 ▶ 기간제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전환 대상 결정
 ▶ 파견·용역 :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대상, 방식, 시기 결정
 - 서울시교육청 추진경과
 ▶ 2017. 8월~9월 : 실태조사
 ▶ 2017. 9월 : 교육부 기간제교원 및 학교강사 공통 가이드 라인 제시
 ▶ 2017. 9월~10월 :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회의
 ▶ 2017. 9월 : 고용노동부에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요청
 ▶ 2017. 10월 :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파견·용역 노사협의체 구성 중

62) 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서(2017.10.31.) 제2조(임금산정시간) ①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② 2018년에 한해, 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보전한다.

63) 기존 토요 휴급휴무일(243시간)에서 토요 무급휴무일(209시간)로 변경

64) 2018년 최저임금보전액 및 지급기준 예시

(단위 : 원)

구 분		2018년	최저임금 보전액(2017년 임금기준 예시)		
			구분	월 최저임금포함액(B)	보전액(A-B)
최저시급		7,530원			
월 최저 임금 (1년근속)	243 시간	243시간×7,530원= 1,829,790원(月) (A)	영양사	1,951,170	0
			사서	1,837,670	0
			조리사	1,761,140	68,650
			조리원	1,681,090	148,700
			그외 직종	1,631,090	198,700

④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별 설명자료 p.1734, 1736)

- 사립 중·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37억원과 교원연구비 36억원을 편성한 바,

〈표 3-23〉 사립 중·특수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67,444	68,258	62,614	△814	△1.2
운영비재정 결함보조	63,764	64,644	59,000	△880	△1.4
교원연구비	3,680	3,614	3,614	66	1.8

-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⁶⁵⁾ 등으로 2017년도(682억원) 대비 △1.2%, △8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비 재정결함지원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는 근무연수 변동에 따라 2017년도 (36억원) 대비 1.8%,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65) 학생수 : △16,901명(207,728명→190,827명) / 학급수 : △196학급(7,684학급→7,488학급)

(3) 교육사업비

- 2018년도 교육사업비는 2017년도 본예산(1조 3,835억 7,100만원) 대비 40.6%, 5,615억 4,300만원 증액된 1조 9,451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9조 1,027억 6,400만원)의 21.4%를 차지함

〈표 3-24〉 교육사업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내 역	
		편성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45,114	100.0	1,383,571	561,543	40.6
교 육 복 지 지 원		1,262,435	64.9	903,735	358,700	39.7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446,436	22.9	340,323	106,113	31.2
교 육 행 정 일 반		165,850	8.5	88,624	77,226	87.1
평 생 교 육		25,120	1.3	23,357	1,763	7.5
인 적 자 원 운 용		25,057	1.3	21,343	3,714	17.4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19,514	1.0	5,276	14,238	269.9
직 업 교 육		702	0.0	913	△211	△23.1

- 교육사업비(1조 9,451억 1,400만원) 중 누리과정지원 등 의무지출⁶⁶⁾ 경비는 1조 1,485억 7,500만원(59.0%)으로 이를 제외한 사업비는 7,965억 3,900만원(41.0%)인 것으로 파악됨

66)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의무지출의 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① 교육복지지원

- 누리과정지원, 급식지원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9,037억 3,500만원) 대비 39.7%, 3,587억원이 증액된 1조 2,624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25〉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내 역	
		편성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62,435	100.0	903,735	358,700	39.7
누	리	601,621	47.7	236,308	365,313	154.6
과	정	343,799	27.2	328,844	14,955	4.5
지	원	122,465	9.7	140,813	△18,348	△13.0
방	과	86,979	6.9	88,067	△1,088	△1.2
후	등	52,144	4.1	56,108	△3,964	△7.1
교	육	51,282	4.1	47,969	3,313	6.9
복	지	4,145	0.3	5,626	△1,481	△26.3
우	선					
지	원					
정	보					
화	지					
원	원					

- 교육복지지원 증가액의 대부분은 누리과정지원비로 2018년도 누리과정지원비(유아학비 및 보육료) 소요액 전액(12개월분)을 편성(6,016억 2,100만원)함으로써 4.8개월분만 편성되었던 2017년도 본예산(2,363억 800만원) 보다 3,653억 1,300만원 이 증액 편성됨

- 금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학비지원, 교과서지원, 방과후등 교육 지원,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감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2018~2022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0.8%)은 교육사업비의 연평균 증가율(1.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학생수 감소 추세가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6〉 교육복지지원사업 중기 재정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주1}					연평균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복지지원 (A)	1,567,607	1,563,276	1,596,593	1,605,092	1,619,060	0.8
교육사업비 (B)	2,337,601	2,305,549	2,349,043	2,372,410	2,446,270	1.1
구성비율 (A/B)	67.1	67.8	68.0	67.7	66.2	
학생수	1,000,743	969,702	951,887	942,609	938,035	△1.6

주 1.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

○ 지난 3개 회계연도의 교육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매 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현액이 전체 세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나, 동 사업의 불용액은 총 불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 교육복지지원사업의 특성상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대상 지원인원의 추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필요 이상의 예산 확보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추계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7〉 교육복지지원사업^{주1}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2016	총 세출규모	8,850,089	179,727	2.0
	교육복지사업	1,280,371	36,216	2.8
	구성비	14.5	20.2	
2015	총 세출규모	8,284,118	134,450	1.6
	교육복지사업	1,235,391	35,519	2.9
	구성비	14.9	26.4	
2014	총 세출규모	7,915,133	117,290	1.5
	교육복지사업	1,155,945	29,460	2.5
	구성비	14.6	25.1	

주 1. 2018년도 교육복지사업 기준으로 작성(2017년도부터 무상급식사업이 급식관리→급식지원으로 이동)

가. 누리과정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691, 693)

- 누리과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2,363억 800만원) 보다 154.6%, 3,653억 1,300만원이 증액된 6,016억 2,1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표 3-28〉 누리과정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601,621	236,308	591,803	365,313	154.6
유아학비 (유치원)	인원수	86,823	87,394	87,394	△571	△0.7
	예산액	233,775	93,813	211,000	139,962	149.2
보육료 (어린이집)	인원수	105,508	102,151	102,151	3,357	3.3
	예산액	367,544	142,194	380,492	225,350	158.5
유아학비	부대경비	302	301	311	1	0.3

-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 누리과정지원비(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4.8개월분(2,363억 800만원)만 편성⁶⁷⁾된 반면,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지원비(유아학비 및 보육료) 소요액 전액(12개월분)이 편성된 바,

67) 2017년도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경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2017년도 본예산 제출안	2017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확정	2017년도 제1회 추경
합	계	591,803	236,308	236,308	591,803
유아학비		211,000	236,007	93,813	211,000
보육료		380,492	0	142,194	380,492
유아학비	부대경비	311	301	301	311

- 교육세 등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⁶⁸⁾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⁶⁹⁾에서 교부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지원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18~2022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누리과정교육비는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변동없이 만3~5세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반영되어 연평균 $\Delta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표 3-29〉 누리과정교육비 및 만3~5세아 원아수 중기 전망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누리과정교육비	605,791	576,592	573,620	544,382	516,634	$\Delta 3.9$
만3~5세원아수	192,331	186,919	183,375	174,023	162,148	$\Delta 3.7$

- 3년 한시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2020년도부터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지원 방향에 따라 누리과정 교육비가 다시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6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69) 지난 2016.12.2. 국회 의결로 2016.12.20. 제정되어 2017.1.1.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3년(2017년~2019년) 한시의 특별회계임

나. 무상급식 (사업별 설명자료 p.1671)

- **무상급식**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청·서울시 및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여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학력인정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2,891억 8,200만원) 보다 6.6%, 190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82억 5,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0〉 무상급식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무상급식	인원수	628,000	632,000	624,549	△4,000	△0.6
	예산액	308,259	289,182	286,682	19,077	6.6

- 2018년도의 경우, 인원수(628,000명)는 2017년도 본예산(632,000명) 보다 △4,000명 감소하였으나, 농축산 물품의 물가상승률(1%→3.8%)과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반영⁷⁰⁾된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재

70) 급식단가 비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감(A-B)
급식단가	초 3,408원	초 3,255원	초 153원
	중 5,058원	중 4,730원	중 328원
급식단가 (인건비포함)	초 4,430원	초 4,175원	초 255원
	중 5,153원	중 4,795원	중 358원

정분담 비율⁷¹⁾협의 이후에 신설된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항목 (중식비 및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원 분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2018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분담률 50%(2,266억 3,000만원)외에 ① 초·중학교 조리종사원 중식비 및 정기상여금(47억 3,600만원)과 당초 분담 제외항목이었던 ②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768억 9,300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표 3-31〉 무상급식 기관별 재원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재원분담(률)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총 소요액(비율)	534,889	(100)	505,036	(100)	508,180	(100)
교육청(비율)	308,259	(58)	289,182	(57)	286,569	(56)
서울시(비율)	135,978	(25)	129,512	(26)	132,869	(26)
자치구(비율)	90,652	(17)	86,342	(17)	88,742	(18)

- 향후 조리종사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소요될 예산규모는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청과 서울시의 실질적인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안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 분담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1) 친환경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 ⇒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 = 50 : 30 : 20

○ 아울러,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인원수 추계⁷²⁾는 매년 12월에 수립되는 다음연도의 학생배치계획과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통계를 활용한 바,

- 한정된 교육재정의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해 무상급식과 같이 대규모의 교육복지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계의 정밀성을 높여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 편성 이후라도 인원수, 단가 등 예산편성 산출계수⁷³⁾의 변동내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경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2)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무상급식 지원인원수 추계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16~'20년 학생배치계획상 2017년도 학생수	교육통계 (2017. 4.1.기준)	증감률	'17~'21년 학생배치계획상 2018년도 학생수	학생추계 (증감률 적용)
초	421,607	405,087	△3%	418,047	406,000
중	232,292	226,014	△2%	225,667	222,000
계	653,899	631,101		643,714	628,000

73) 지원인원수, 지원단가, 지원일수 등

다. 학기중 평일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432, 434)

- **학기중 평일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396억 6,200만원) 보다 △10.4%, △41억 2,200만원이 감액된 355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32〉 학기중 평일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 감 내 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5,540	39,662	38,662	△4,122	△10.4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	인원수	42,164	45,460	45,460	△3,296	△7.3
	예산액	29,911	32,372	32,372	△2,461	△7.6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인원수	15,000	18,000	15,500	△3,000	△16.7
	예산액	5,629	7,290	6,290	△1,661	△22.8

-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국제중, 각종학교(중학교과정),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에게 학기중 평일 중식비⁷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8년도 편성액은 2017년도 대비 평균 지원단가 상승분(340원), 지원인원수 감소분(△3,296명), 지원일수 감소분(△1일)이

74) 평일 중식지원 단가 : 급식일(학교급식단가 전액), 비급식일(5,000원)

반영⁷⁵⁾되어 2017년도(323억 7,200만원) 보다 △24억 6,100만원이 감액된 299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토·공휴일의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8년도 편성액은 2017년도 대비 지원단가⁷⁶⁾ 변동없이 지원인원수 감소분(△3,000명)과 지원일수 감소분(△2일)이 반영⁷⁷⁾되어 2017년도(72억 9,000만원) 보다 △16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억 2,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라. 교육급여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67)

○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⁷⁸⁾에 따라 수급자⁷⁹⁾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574억 5,700만원) 보다 △23.1%, △132억 7,200만원이 감액된 441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75) 평일 중식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산출계수	지원단가	지원인원수	지원일수
변동내역	4,140원 → 4,480원	45,460명→42,164명	172일→171일

76) 토·공휴일 중식지원 단가 : 5,000원(2017년도와 동일)

77) 평일 중식지원 산출계수 변동내역

산출계수	지원인원수	지원일수
변동내역	18,000명→15,000명	81일→79일

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교육급여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 자녀

〈표 3-33〉 교육급여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4,185	57,457	52,846	△13,272	△23.1
기타급여	인원수	59,494	70,915	△11,421	△16.1
	예산액	11,045	8,301	2,744	33.1
입학금 및 수업료	인원수	18,204	23,755	△5,551	△23.4
	예산액	33,140	49,156	△16,016	△32.6
보조금반환	-	-	1,055	-	-

- 기타급여의 경우 부교재 및 학용품비 등의 지원단가 상승분⁸⁰⁾ 반영으로 27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지원인원수 감소분(△5,551명) 반영으로 △160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의2조⁸¹⁾에 따라 소

80) 지원단가 변동내역(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018.1.1. 시행, 2017.9.12. 교육부)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전년대비 증감
	지원단가	지원학년	지원단가	지원학년	
부교재비	41,200원	초1~고3	66,000원	초1~초6	24,800원 증액
			105,000원	중1~고3	63,800원 증액
학용품비	54,100원	중1~고3	50,000원	초1~초6	순증(신설)
			57,000원	중1~고3	2,900원 증액
교과서대	학년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고1~3	학년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고1~3	(교과서대 인상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고1~3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고1~3	(고지금액 인상분)

-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요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는 바,

〈표 3-34〉 교육급여지원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 분담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분담기관(분담률)	예산(안)	분담기관(분담률)	예산(안)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14,186	국 가(60%)	6,627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국 가(60%)	11,373	서울시(28%)	3,093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서울시(28%)	5,307	자치구(12%)	1,325
		자치구(12%)	2,274	계	11,045
		계	33,140	계	11,045

- 국가·서울시·자치구의 분담률은 60:28:12이고 교육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⁸²⁾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교육청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음

- 2018년도 편성액(441억 8,500만원) 중 141억 8,600만원은 교육청 부담분(자체재원)이며 299억 9,900만원은 국가·서울시·자치구의 부담분(보조금)임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동 교육급여지원사업⁸³⁾ 외에 학비지원사업⁸⁴⁾으로도 지원되는 바,

82)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중위소득 40%미만인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교육수급자

83) 교육급여지원사업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84) 학비지원사업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방통고, 각종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국제중 등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단, 교육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한 지원은 교육급여로 지원)

각 사업의 3개년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표 3-35〉 교육급여(입학금및수업료) 및 학비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8 예산안	2017		2016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인원수	교육급여	18,204	20,948	23,755	22,497	29,080
	증감	△2,744	△2,807	1,258	△6,538	-
	학비지원	37,799	44,589	41,782	52,849	46,311
	증감	△6,790	2,807	△11,067	6,538	-
예산액	교육급여	33,140	43,910	49,156	39,270	51,954
	증감	△10,770	△5,246	9,886	△12,684	-
	학비지원	27,486	34,695	29,449	36,277	23,593
	증감	△7,209	5,246	△6,828	12,684	-

※ 증감 : 기편성 대비 증감

- 2016년도 및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급여를 학비지원보다 1.5배 이상⁸⁵⁾ 편성하였으나 매년도 추경에서는 교육급여를 감액⁸⁶⁾하고 감액분만큼을 학비지원에 증액하는 비합리적 편성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편성 사업설명서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학비지원 대상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 결과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추경에서 교육급여지원 감액분의 학비지원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매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85)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급여가 학비지원 보다 2.2배 많고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1.7배 많음

※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교육급여가 학비지원 보다 1.2배 많음

86) 교육급여 재원 중 국가·서울시·자치구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분에서 감액

- 금번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⁸⁷⁾에 따르면 2018년도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급여보조금(국비) 예산편성방식⁸⁸⁾은 신규수급자를 위한 여유인원수(10.6%)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교육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급여보조금(국비) 예산을 편성⁸⁹⁾한 것으로 검토된 바,
-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사업부서가 교육청 부담분(자체재원)에 대해 교육부의 예산편성방식을 관행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발생한 여유분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고 학비지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추계의 오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 교육급여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권리성 급여로서 수급자가 되면 반드시 급여 지급이 필요한 의무지출 경비라는 점 때문에 추계의 정밀성이 극도로 낮음⁹⁰⁾에도 불구하고

87)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88) 교육부 교육급여보조금(국비) 예산편성 방식 : 당해연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신규수급자를 위한 여유분 10.6%를 추가한 인원수에 전년도 대비 학생수변화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추계하여 교육급여 예산 편성
 < 2018년도 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 인원수 추계 >

(단위 : 명)

기준	'17.05.31. 수급자 수(a)	추가 인원 (b=a×10.6%)	합계 (c=a+b)	학생수 증감률(d) ('17→'18)	'18년(c×d)
초	119,935	12,713	132,648	1.80%	135,036
중	88,594	9,391	97,985	△3.02%	95,026
고	137,098	14,532	151,630	△6.83%	141,274
...
계	351,557	37,265	388,822		377,771

89) 2017년도 예산주요사업비 설명자료(2016. 12. 교육부)

90) 2017년도 집행추이 및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급여지원 본예산의 추계의 정밀성 정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회계년도			2017년도		
	본예산(A)	집행액(B)	차이(A-B)	본예산(A)	집행예정액(B)	차이(A-B)
교육급여지원	62,723	47,224	15,499	57,457	42,563	14,894

* 2017.10.24.기준 집행액 31,922백만원을 1~3분기 수업료 집행액으로 추산, 1분기당 10,641백만원 집행추산액을 31,922백만원과 합산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로 판단되며,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증감 요청사유가 본예산 추계의 내재적·구조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점 또한 엄중 경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8년도의 경우 교육청 자원 부담분(141억 8,600만원)은 2017년 07월 31일 기준으로 교육청 자원 부담 지원대상 8,314명에 대해 학생배치계획⁹¹⁾상 고등학생 감소율($\Delta 7.4\%$)을 반영하여 편성(7,700명)한 것으로 검토⁹²⁾되어 교육부 예산편성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추계의 정밀성 여부는 2018년도 결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부서 이기주의적 예산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91) 2017~2021학년도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알림(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7537, 2016.12.30.)

92)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마.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828)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518억 7,100만원) 보다 5.2%, 26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5억 5,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6〉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4,553	51,871	51,871	2,682	5.2
초등돌봄교실운영	54,540	51,864	51,864	2,676	5.2
기 타 ^{주1}	13	7	7	6	85.7

주1. 초등돌봄교실담당자 연수, 초등돌봄교실운영 길라잡이제작

- 초등돌봄교실운영비의 주요 증감사유를 인건비·운영비·시설비로 구분하여 검토하면

〈표 3-37〉 초등돌봄교실운영비(인건비·운영비·시설비) 주요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주요 증감사유
인건비 ^{주1}	물량(명)	603/836	603/836	0/0	인건비 인상분 및 처우개선 수당 반영
	예산액	35,557	33,536	2,021	
운영비 ^{주2}	물량(실)	556/883	560/879	△4/4	겸용교실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200만원→250만원)
	예산액	12,216	11,838	378	
시설비 ^{주3}	물량(실)	0/17/73	5/20/0	△5/△3/73	돌봄교실 시설개선비 (500만원×73실) 추가
	예산액	620	450	170	

주1. 인건비 물량 : 전일제 돌봄전담사 / 시간제 돌봄전담사

주2. 운영비 물량 : 돌봄전용교실 / 돌봄겸용교실

주3. 시설비 물량 : 전용교실 설치비 / 겸용교실 설치비 / 돌봄교실 시설개선비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 및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여 2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겸용교실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200만원→250만원)으로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돌봄교실 시설개선비가 추가되어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2015~2017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의 경우, 운영비 예산액은 연평균 △4.2% 감소하였으나, 이용학생수⁹³⁾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연간 1인당 운영비 지원액은 연평균 △6.0% 감소한 바,

〈표 3-38〉 초등돌봄교실운영(운영비) 편성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7년도 본 예산	2016년도 최종예산	2015년도 최종예산	연평균 증감률
운영비	11,838	12,953	12,926	△4.2
이용 학생수	43,619	42,224	41,949	2.0
연간 1인당 운영비 지원액 (단위 : 원)	271,395	306,769	308,136	△6.0

- 운영비 지원단가를 인상한 2018년도의 경우, 2017년도 이용 학생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1인당 운영비 지원액은 280,061원⁹⁴⁾으로 2017년도(271,395원) 보다 8,666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나,

- 지난 2015년도(308,136원)와 비교하면 90.9% 수준으로 이용 학생수가 증가될 경우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9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4) 1인당 지원액 280,061원 = 122억 1,600만원(2018년도 운영비편성액) ÷ 43,619명(2017년도 이용학생수)

- 또한 20018년도 돌봄교실 시설개선비가 추가 편성된 바, 돌봄교실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가 투자되어 왔으나, 현재 공·사립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대부분 설치되어⁹⁵⁾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는 둔화될 것으로 검토된다는 점에서 기설치된 돌봄교실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71)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문화·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308억 5,400만원) 보다 1억 8,800만원 증액된 310억 4,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39〉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1,042	30,854	30,854	188	0.6
교육복지학교사업비	26,365	28,754	28,754	△2,389	△8.3
(서울)희망교실 운영	4,261	2,100	2,100	2,161	102.9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	416	-	-	416	순증

95) 2017년도 초등돌봄교실 설치현황

구 분	학교수	돌봄교실 설치학교수	돌봄교실수	
			전용교실	겸용교실
합 계	601	574	1,060	393
공립초	562	560	1,046	388
사립초	39	14	14	5

- 교육복지학교사업비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학생수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도의 경우 금년도(287억 5,400만원) 보다 △23억 8,900만원 감소한 바,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6,839명)로 학생당 경비가 2017년도(152억 3,600만원) 보다 △16억 5,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희망교실 운영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제·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교사 1인이 집중지원학생⁹⁶⁾을 포함하여 4~8명 내외의 학생과 결연(팀 구성)하여 사제동행, 인생멘토 활동, 대상학생의 자기계발 지원 등 교사·학생 간 심층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으로 학교 적응력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 2015~16년도에는 고등학교의 교육복지학교사업비 중 학생당 경비 집행차액 범위 내에서 운영⁹⁷⁾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초·중학교까지 확대(1,000팀→3,000팀)하여 21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000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7년도(21억원) 보다 102.9% 증액된 42억 6,100만원⁹⁸⁾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96) 집중지원학생 :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문화, 탈북,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

97) 2015년도 500팀, 2016년도 1,000팀

98) 희망교실운영비 42억원, 희망교실관련 자료제작·홍보 등 6,100만원

- 동 사업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⁹⁹⁾에 따라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2015년도부터 매년 2배 이상의 지원대상(500팀→1,000팀→3,000팀→6,000팀)이 증가되고 있고, 3개년의 운영실적이 누적되어 있는 바, 소요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 타당한 근거를 반영하여 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396)

-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16억 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0〉 혁신교육지구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1,602	10,659	12,459	943	8.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11,000	10,200	10,200	800	7.8
교육지원청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주1}	311	185	185	126	68.1
기 타 ^{주2}	291	274	2,074	17	6.2

- 주1. 혁신교육지구 미참여 자치구(3개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마을결합형학교운영 사업을 지원
- 주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역량강화·홍보·협의체운영, 교육지원청담당자워크숍, 마을자원자료집개발, 실무지원단운영, 혁신교육지구운영(서울시지원금)

99) 2015~18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p48) : 책임교육 1.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p.57) : 정책방향 책임교육의 실천과제 2-1.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총 22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2개 자치구로 자치구별 평균 5억원씩 110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2015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서 2018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¹⁰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2017년도에 전년대비 △17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13억원 증액 편성된 사례가 있음

〈표 3-4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
교육청	예 산 액	11,000	10,200	9,000	5,250
	전년대비 증감액(률)	800 (7.8)	1,200 (13.3)	3,750 (71.4)	
서울시	예 산 액	8,800	7,500	9,280	6,450
	전년대비 증감액(률)	1,300 (17.3)	△1,780 (△19.2)	2,830 (43.9)	

※ 2017년도 서울시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된 혁신교육지구 운영 17억원은 제외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작성한 “2017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¹⁰¹⁾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도에 110억원

100) 서울시 평생교육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7 (22개구×4억원=88억원)

101) 2017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2017.2. 서울시·서울시교육청) p.21

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서울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계획보다 △22억원 적은 88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가 부족 편성한 △22억원은 협력사업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추경편성¹⁰²⁾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 부담분 부족분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서울시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청·서울시·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제고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 확보 시 각 기관의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강제적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¹⁰³⁾ 중 재원분담과 관련된 강행규정을 포함시키도록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2) 2017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제1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가 있음
 ※ 2017년도 서울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비 예산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본예산	2017년도 조례상전출금 (본예산)	2017년도 제1회 추경	계
7,500	1,700	1,000	10,200

103)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가.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652)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혁신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6억 9,500만원을 편성한 바, 2017년도(379억 2,000만원) 대비 49.5%, 187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42〉 학교혁신 기획·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6,695	37,920	38,244	18,775	49.5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39,500	36,740	36,740	2,760	7.5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15,408	43	43	15,365	32,732.6
교육지원청 행정혁신 지원	721	267	267	454	170
기 타 주 1	1,066	870	1,194	196	22.5

주1.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SnS) 협력활동 지원, 학교혁신일반화지원, 서울미래교육상상프로젝트 운영,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시·도교육청네트워크 교육혁신지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 동 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 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세세부사업¹⁰⁴⁾으로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지원사와 교육지원팀¹⁰⁵⁾ 수업시수 경감 강사 인건비 및 공모사업 학교

104) 예산서상에서는 사업항목(1.~, 2.~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세세부사업이라고 칭함

105)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육 관련 지원업무* 전담팀으로 (비담임)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지원 인력으로 구성 (출처 : 2016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 2015.12.)

* 교육 관련 지원업무 : 교무, 연구, 교육복지, 과학·정보, 체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부모회(동아리), 대외관계, 자료 관리 및 준비

자율운영비¹⁰⁶⁾를 지원하고 있음

- **학교업무정상화 안착지원**(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인상분 및 교무행정지원사 증원(유 12명, 초·중·고·특수 7명)이 반영되어 증액(27억 6,000만원)된 것이며,
-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비를 지원)은 153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 사업의 지원방식이 변경¹⁰⁷⁾되어 증액사유가 발행된 것으로 사료됨
 - 금년도에는 학교자율운영비 지원방식이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로 교육청이 제시한 교당 500만원 이하의 학교대상 공모사업 31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여 추진하고 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약 110억원이 학교에 교부되었으나,
 -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학교자율운영비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로 153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자율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한 것은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국·사립학교 지원 추가 및 지원 방식 일원화 등의 개선¹⁰⁸⁾을 위한 것으로

106) 일정규모의 학교대상 공모사업(목록)을 모아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가 목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유사·고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107)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되다가 목적사업비로 지원됨

108) 2018년도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기본계획(안)(서울교육청 교육혁신과-18047, 2017.10.13.)

- 학교자율운영비 대상사업의 확대(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운영영역¹⁰⁹⁾에 부합하는 사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¹¹⁰⁾, 교원·학부모의 협의회비 비율 확대¹¹¹⁾, 공모사업별 집행기준을 학교자율운영비 집행기준으로 일원화한 점 측면은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나,

〈표 3-43〉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학교자율운영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사 업 명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대상사업	교당 1,000만원 이하, 12교 이상 지원하는 학교대상 공모 및 목적사업	교당 500만원 이하의 학교대상 공모사업
지원대상	○ 초, 중, 고 대상 ○ 국·공·사립 전체	○ 초, 중, 고 대상 ○ 사립초, 사립고 제외
운영방식	○ 학교 자율 결정(과제 및 예산) ○ 운영 영역 제시(3개) - 학교자율교육활동 -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 31개 과제 중 선택 (필수3, 선택28) ○ ‘맞춤형’ 포함
교원 지원	「교원 공동체 역량 강화」영역으로 통합운영	부서별 별도 시행(운영 및 예산 지침 상이)
예산	○ 교당 500~1,400만원 ※ 고교, 국제중, 사립초는 500만원 ○ 154억원 편성 ○ 목적사업비로 교부	○ 교당 350~1,050만원 ※ 고교는 350만원 ○ 약 110억원 편성 ○ 학교운영비로 교부 ※ 사립은 재정결함지원금

- 109) 학교자율교육활동,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등 3개 운영영역
 110) 교육청이 제시하는 공모사업 목록은 예시로서 학교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운영영역 별로 목록과 유사하거나 학교 자체 고유사업도 추진도 가능
 111) 목적사업비의 협의회비 비율

학 교 자 율 운 영 비	기타 목적사업비
- 교원학습공동체 협의회비 : 교원공동체역량강화 영역 총액의 50%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 학부모회 운영시 협의회비 : 학부모회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의 50% 이내에서 집행 가능	- 해당 목적사업의 집행기준에 따라 협의회비(업무추진비) 비율 상이함 예시) 혁신학교운영비의 경우 혁신학교 교부예산 총액의 7% 이내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가 편성하는 대로 집행 가능한 경비이고 목적사업비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집행해야하는 경비라는 점에서 학교자율운영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된 것은 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축소된 것으로 사료됨

○ **교육지원청 행정혁신지원**은 7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제시를 통해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교육지원청(서부, 강동송파)이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4개 교육지원청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6개의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¹¹²⁾이 운영될 예정임

나. 혁신학교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669)

○ 서울형혁신학교¹¹³⁾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94억 8,500만원) 보다 20.5%,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12) 서울미래교육 구현 및 학교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행정혁신 모델을 연구하는 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233, 2017.01.05.)

113) 서울형혁신학교 :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 서울형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학교상

학교운영 혁신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학교 :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구축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 불필요한 업무 감축, 업무전담팀 구성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학교 : 학교와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통합적인 삶의 교육과정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신나는 학교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 수업 등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평가하는 학교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서 수업과 연계된 평가
공동체문화 활성화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 인권존중, 비폭력·평화교육, 학생자치·자율활동 활성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 : 학부모, 자치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돌봄과 배려의 안전한 학교 : 빈곤위기 학생 안전망 강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

- 초·중·고 혁신학교에 지원(교부)하는 혁신학교운영비는 총 113억 6,000만원으로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 15억원¹¹⁴⁾이 포함된 것임

〈표 3-44〉 혁신학교운영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증감내역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1,430	9,485	94,850	1,945	20.5
혁신학교 운영비지원	학교수	200	160	160	40	
	예산액	11,360	9,040	9,040	2,320	25.7
기 타 ¹⁾		70	445	445	△375	△84.3

주1.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혁신학교 지정·심사·평가, 혁신학교운영 협의회, 혁신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연구팀운영, 혁신학교공모설명회 등

○ 2018년도의 경우, 총 200개교의 서울형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15일 신규(재)지정 혁신학교 공모결과에 따라 2018학년도에 189개교¹¹⁵⁾가 서울형혁신학교로 운영될 예정임

- 또한 2018년도 중 공모를 통해 2학기부터 지정·운영되는 혁신학교 10교가 추가될 예정인 바, 2학기부터 운영될 10개교 중 신규지정 혁신학교의 6개월분의 운영비는 선제적으로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¹¹⁶⁾

114) 서울시 평생교육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35 (200교×750만원=15억원)

115) 2018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현황

- 기존 혁신학교* 167교, 교육감이 임의지정한 신설학교 1교(내곡중), 신규 혁신학교 21교

* 2017학년도에 지정·운영된 혁신학교는 총 168교이나, 2018.3.1.자로 개포초 휴교로 인해 2018.3.1. 기준 기존 혁신학교는 167교임

116) 혁신학교 운영비는 신규지정학교에 대해서는 1교당 평균 5,5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재지정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1교당 평균 3,500만원을 차등 지원

③ 신규사업

- 2018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¹¹⁷⁾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8개 사업임

〈표 3-45〉 2018년도 신규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항목	2018년도 예산안	재원	주관부서	설명자료
합 계			9,816			
1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3,311	자체	교육혁신과	p.678
2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메이커교육운영	2,846	자체, 서울시(10억)	교육혁신과	p.508
3	특성화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실습실유해환경개선	2,100	자체	진로직업교육과	p.1448
4	교육과정운영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 지원	660	자체	중등교육과	p.944
5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600	자체	진로직업교육과	p.1485
6	도서관운영 지원	개포도서관건립운영통합계획연구용역	200	자체	평생교육과	p.1180
7	시설사업관리	교육시설관리본부운영효율화연구용역	71	자체	교육시설안전과	p.1908
8	교육정책 기획 관리	대내외소통	28	자체	정책·안전기획관	p.209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교육혁신과)¹¹⁸⁾ 사업은 기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던 학교컴퓨터교육실 노후PC 교체예산이

117) 신규사업 :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명* 기준으로 2018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사업

* 사업명 : 예산서상에서는 사업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상 세세부 사업이라고 칭함

118) 사업별 설명자료 p.678

나 2018학년도부터 정보화교과가 필수화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 컴퓨터교육실 PC를 중점 관리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목적사업비로 33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메이커교육운영**(교육혁신과)¹¹⁹⁾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메이커교육¹²⁰⁾ 중장기(2018~2022년) 발전계획¹²¹⁾을 발표한 바,

- 2018년도부터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하되 2018년도에는 100개교에 3D프린터 보급, 찾아가는 메이크 버스 100개교 지원, 메이커스페이스·메이커교육 모델학교 운영 등 2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¹²²⁾

-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임에도 관련 전문가 인력풀 부족 등 준비 부족, 예산확보 미지수, 교육효과 의문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¹²³⁾가 있었던 바,

- 2018년도는 메이커교육 시행 첫해로 일부 거점학교와 발명교육 센터에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나,

119) 사업별 설명자료 p.508

120)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 : 자율성·공유·협력에 기초해 제품의 기획·제작·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이끄는 프로젝트 교육

121) 서울형 메이커교육 중장기(2018~2022년도 발전 계획 주요 내용

-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총 20개)

-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모델 학교 운영(연간 9개교, 교당 5천만원 지원)

- 메이커 교육 기자재 지원(3D 프린터·3D 펜 등)

- 찾아가는 메이커 체험 교육 지원(메이크 버스, 메이크 기자재 트럭, 길동무 차량 등)

-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 구축(온라인 신청승인 시스템, 공유 자료실) 등을 추진

122) 2017.11.01.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123) 머니투데이 2017.11.01. 기사

-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의 일률적 확대 보급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교육과정)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 조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특성화고실습실유해환경개선(진로직업교육과)**¹²⁴⁾ 사업은 특성화고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실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에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보건 및 유해환경 관련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소요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에 과학실험실의 안전장비 및 설비 확충 지원 사업 시행¹²⁵⁾에 이어 2018년도에는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21억원을 편성하여 40개교에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를 구비하도록 지원할 예정임¹²⁶⁾

○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중등교육과)**¹²⁷⁾ 사업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2016년 4월, 일반고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 혁신방안¹²⁸⁾을 마련한 바,

124) 사업별 설명자료 p.1448

125) 2017 과학실험실 안전장비 및 설비 확충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안내(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2904, 2017.02.21.)

126)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개선 및 안전설비 구비 예산 편성 내역

- 용접실습실 개선 : 6,000만원×10교= 6억원

- 납땜실습실 개선 : 5,000만원×15교= 7억5,000만원

- 공작기계실습실 개선 : 5,000만원×15교= 7억5,000만원

127) 사업별 설명자료 p.944

128) 일반고 학생 선택 교육과정(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혁신방안 알림(중등교육과-14477, 2016.4.20.)

- 혁신방안으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¹²⁹⁾을 제시하고 선도학교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선택과목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충, 선택과목 교사 없는 경우 강사 확보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17년도에는 10개교, 25강좌 운영을 위해 5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선도학교 22개교를 지원하고자 6억 6,000만원¹³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직업진로교육과)**¹³¹⁾ 사업은 2017년도에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벌현장학습단 공모사업에 서울시교육청이 선정되어 해외현장학습에 10명을 파견한 바, 2018년도에 이를 확대하여 해외에 파견할 서울형 글로벌현장학습단 운영(2교) 및 서울형 국제화교육 기반조성(10교)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한 것임¹³²⁾

○ **개포도서관건립운영통합계획연구용역(평생교육과)**¹³³⁾ 사업은 노

129)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학생들이 특정 진로과정의 교과목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며 개별 교육과정을 형성해가는 방식	※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이나 특화된 중점과정을 학교 간 협력에 의해 공동 운영하며 확장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
※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다양한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기회의 장으로서, 개방형과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멀티 트랙(multi-track)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130)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 편성 내역

-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 3,000만원×22교= 6억 6,000만원

131) 사업별 설명자료 p.1485

132)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예산 편성 내역

- 서울형글로벌현장학습단 선정교 지원 : 1억 5,000만원×2교= 3억원
- 서울형국제화교육기반 조성 지원 : 3,000만원×10교= 3억원

133) 사업별 설명자료 p.1180

후된 개포도서관을 증개축¹³⁴⁾함에 있어 지역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포도서관의 운영방향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도서관 통합 공간 디자인 제안 등 설계반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④ 기타 주요 증액(10억원 이상, 100% 이상 증액) 사업

- 2018년도 10억원 이상 편성 사업 중 2017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100%이상 증액된 사업은 선거관리 등 16개 사업으로 검토됨
- **기타기금적립(교육재정과)**¹³⁵⁾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금 적립액 299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119억 3,100만원) 대비 150.9%, 180억 400만원이 증액된 바,
 - 염리3구역 토지매각 109억원, 노이초·노이초 부지 매각(이관) 63억원, 수색6·7지구 토지매각 46억원 등 2018년도 자산매각대금 259억 3,500만원과 2017년도에 발생한 자산매각대금 중 신청사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처분대금 40억원¹³⁶⁾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임

134) 개포도서관 증개축 추진 경과

-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16. 5월)
- 개포도서관 신축 추진 기본계획 수립 ('16. 10월)
- 2017년 ~ 20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사업비 반영 ('16.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적정 ('17. 4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개축심의 ('17. 9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17. 9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17. 10월)

135) 사업별 설명자료 p.1758

136) 은평구 응암동 39-17 매각대금 19억원 등 2017년도 중 징수결의한 매각대금 중 기금적립재원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대금

- **특성화고지원**(진로직업교육과)¹³⁷⁾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특성화고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중등 직업 교육학생 비중을 확대하는 사업¹³⁸⁾으로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특성화고(15교) 지원비 143억 2,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비¹³⁹⁾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바,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내역 중 중등 직업교육 학생비중 확대 지원비 14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편성¹⁴⁰⁾한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지원**(교육재정과)¹⁴¹⁾은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49조¹⁴²⁾에 따라 각급학교 학교장이 납부하던 공제료를 2018년도에는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일괄납부¹⁴³⁾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대납 예

137) 사업별 설명자료 p.1454

138)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16.93%→25.4%로 확대(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11203, 2016.9.2.)

139) 특성화고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미래형 첨단학교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운영비(학급증설, 학과재구조화 등) 지원

140) 직업계고 비중확대 지원사업이 취소, 미추진될 경우 다음연도 보통교부금 감교부정(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3968, 2017.09.19.)

141) 사업별 설명자료 p.1790

1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9조(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43)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사립 초·중·고·각종·특수학교 등(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수업료자율학교 등은 일괄납부 대상 제외)

산(55억원)을 별도 편성한 것임¹⁴⁴⁾

- 원칙적으로 공제료 납부 의무자는 학교장이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¹⁴⁵⁾에 따라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초등교육과)**¹⁴⁶⁾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기초·기본교육으로 안성맞춤교육과정¹⁴⁷⁾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12억 2,200만원)보다 19억 8,600만원이 증가된 32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주된 증가 내역은 안성맞춤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1,000만원씩 1학년 200학급의 교실환경개선비¹⁴⁸⁾ 20억원과 공립초 6개교에 학생 참여형 놀이터¹⁴⁹⁾를 만드는 안성맞춤놀이터 재구성 예산 4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44) 학교안전공제료 교육청 대납

- 대납대상 :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사립 각급학교
- 학교안전공제료 대납예산을 사업부서(교육재정과)에 별도 편성하여 일괄 대납
- 학교에는 학교별 공제료가 차감되어 학교운영비 지원(교부)

1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146) 사업별 설명자료 p.859

147)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배움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한글 및 수학교육 활동 △학습 부담 감소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교육 △학습자가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놀이 중심 교육 활동 등을 포함

148)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교실환경개선 사례 : 현재 1~6학년 교실의 대동소이한 교실 환경구성을 1학년 교실답게 구성하기 위하여 화이트칠판, 장난감 검용 숫자글자판, 낙서칠판, 원탁형책상, 칼라 의자 등으로 교체하고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놀이용소파, 놀이용 매트, 다양한 놀이교구를 비치하고 있음

149) 기존의 미끄럼틀, 철봉 등 기구 중심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즐기며 스스로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건강한 위험이 살아있는 안전한 놀이터로 아이들이 놀러오는 놀이터를 말함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체육건강과)¹⁵⁰⁾는 학교 자율체육 활성화 및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4억 7,800만원) 보다 356.6%, 17억 500만원이 증액된 21억 8,300만원이 편성된 것임
 - 2018년도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20억원 감액됨에 따라 미편성 시 정상적인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자 자체재원으로 편성됨¹⁵¹⁾

- **안전교육확대**(정책·안전기획관)¹⁵²⁾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1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학생안전체험교육비 14억 3,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학생안전체험교육비는 2017년도의 경우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필수형사업¹⁵³⁾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

150) 사업별 설명자료 p.1530

151)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18년도 특별교부금 감액분 및 자체재원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금 사업명	2017년도 특별교부금(A)	2018년도 특별교부금(B)	특교 감액분 (A-B)	자체재원 확보예산
합 계	3,879	1,869	1,980	1,705
여학생체육활성화	120	40	80	40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1,640	1,184	456	456
교육지원청단위학교스포츠클럽리그지원	822	435	387	387
교내학교스포츠클럽시범운영	120	0	120	120
토요스포츠클럽운영	762	0	762	672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지원	30(불용예정)	0	0	30
학교체육활성화홍보지원	100	0	100	0
학생체력향상지원	60	0	60	0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225	210	15	0

152) 사업별 설명자료 p.253

153)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필수형 사업

- 2017년도에 학교대상 공모사업 중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시행
- 공모사업 통합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
- 공모사업의 유형을 필수형/선택형/맞춤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에 제시
- 학교에서는 필수형/선택형/맞춤형 사업 중에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선택

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¹⁵⁴⁾로 변경되어 안전교육확대의 목적사업비¹⁵⁵⁾로 변경 편성된 것임

〈표 3-46〉 10억원 및 100% 이상 증액(10억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항목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내역		주요 증액사유	설명 자료
				증감액	증감률		
1	선거관리	32,039	3,180	28,858	907.4	2018년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p.168
2	기타기금적립	29,935	11,931	18,004	150.9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적립금 반영	p.1758
3	시스템운영	18,687	5,252	13,435	255.8	차세대지방교육행정시스템(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	p.1937
4	특성화고원지	15,038	1,744	13,294	762.2	직업교육 학생 비증확대 특성화고(15교) 지원비 135억원 증액	p.1454
5	학교안전공제회지원	5,521	1,690	3,832	226.8	학교안전공제로 납부방법을 현행 학교 개별 납부에서 2018년도에는 교육청 일괄납부로 변경	p.1790
6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4,166	222	3,945	1,778.7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 기준 초과학교 시설개선비 반영	p.1662
7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3,208	1,223	1,986	162.4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비(교실환경개선 및 학교놀이터 재구성) 증가	p.859
8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3,129	933	2,196	235.4	포스터 등 광고 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아파트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광고 등)	p.64

154) 일정규모의 학교대상 공모사업(목록)을 모아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가 목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유사·고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155)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실습위주의 학교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목적사업비로 편성함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이하생략)

** 제11조(안전교육의 실시) ②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 업 항 목	2018년도 예 산 안	2017년도 본 예 산	증 감 내 역		주요 증액사유	설 명 자 료
				증감액	증감률		
9	정보화관리	3,025	1,213	1,812	149.3	본청·직속기관지원청의 교체대상 노후 PC 증가(60대→130대)로 4억원 증액 및 스쿨넷서비스운영 사업 사업항목변경(보안운영→정보화관리)으로 14억원 증액	p.1957
10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2,980	867	2,113	243.7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시설비 지원학교 증가(2교→6교)	p.903
11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2,183	478	1,705	356.6	특교지원액 감소(△20억원)에 따른 자체 재원 추가 확보	p.1530
12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 원	2,024	902	1,122	124.3	원비 동결 유치원 확대에 따른 증액 (715학급→1,687학급)	p.701
13	통계서비스 운 영	1,951	108	1,843	1,714.5	빅데이터 분석 추진 및 차세대 교육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분 담금 반영	p.232
14	안 전 교 육 확 대	1,946	506	1,440	284.5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사업에서 필수사 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목적사업비 로 편성	p.253
15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성화 (특 교)	1,582	0	1,582	순증	특별교부금 증액 교부	p.599
16	제2서울창의 인성교육센터	1,486	20	1,466	7,328.4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개관에 따른 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	p.587

(4) 시설사업비

① 총규모

- 2018년도 시설사업비¹⁵⁶⁾ 총규모는 2017년도(4,514억 5,800만원)보다 48.4%, 2,186억 2,600만원이 증가한 6,700억 8,400만원으로 예산안 총액(9조 1,027억 6,400만원)의 7.4%에 해당함

〈표 3-47〉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편성액(A)	구성비	편성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A/B)	자체재원	목적지정
670,084	7.4	451,458	5.5	218,626	48.4	660,134	9,950

- 최근 5년간의 시설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면 2018년도 시설사업비(6,700억 8,400만원)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비중도 2018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검토됨

〈표 3-48〉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	2017	2016	2015	2014
시설사업비(A)	670,084	451,458	495,781	381,357	267,414
전년도대비증감률	48.4	△8.9	30.0	42.6	-
본예산(안)액(B)	9,102,764	8,147,725	8,001,287	7,690,091	7,439,129
구 성 비(A/B)	7.4	5.5	6.2	6.0	3.6

156) 시설사업비 범위 :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7개 세부사업

- 그러나, 매년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교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시설사업비에 대한 증감률 및 구성비가 유동적인 바, 당시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시설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시설비 투자계획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8~2022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서도 향후 시설사업비 규모는 연평균 $\Delta 2.1\%$ 감소되는 것으로 적시되고 있는 바,

〈표 3-49〉 시설사업비 재정지출계획^{주1}(2018~2022)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시설사업비 (A)	746,149	617,298	478,509	584,574	684,710	$\Delta 2.1$
학교신증설	162,073	162,073	162,073	38,010	38,010	$\Delta 30.4$
학교교육 환경개선	584,076	455,225	316,436	546,564	646,700	2.6
예산총액 (B)	9,649,309	9,593,187	9,689,873	10,000,874	10,362,674	1.8
구성비 (A/B)	7.7	6.4	4.9	5.8	6.6	

주 1.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상의 예산액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

- 특히,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¹⁵⁷⁾ 후 2020년도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의 규모(3,164억 3,600만원)가 2018년도(5,840억 7,600만원)의 54.2% 수준이고 예산 총액에 대한 시설사업비의 비중(4.9%)도 최저로 나타나고 있어 유아교육지

15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존속기간 : 2017년도~2019년도(3년간)

원특별회계 예산의 지원 방향 등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사업비의 유동성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의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학교시설개선 종합계획¹⁵⁸⁾ 수립¹⁵⁹⁾으로 2018년도부터는 시설사업비에 투자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재정 여건 변동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바, 시설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8)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화·재난위험 학교시설 개선대책 등을 포함

159) 2017년도 12월 교육시설기본법 제정 및 2018년도 상반기 종합계획 수립 예정
(출처 : 2017년도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자료, 교육부, 2017.08.01.)

② **학교신·증설** (사업별 설명자료 p.1689, 1695)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은 2017년도(973억 2,700만원) 보다 66.3%, 644억 9,600만원 증액된 1,618억 2,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0〉 학교신·증설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161,823	97,327	64,496	66.3	161,823	-	
학교신설	학교수	22	37	△15	△40.5	22	-
	예산액	124,063	86,607	37,456	43.2	124,063	-
교실증축	학교수	30	32	△2	△6.3	30	-
	예산액	37,760	10,720	27,040	252.2	37,760	-

- 동 사업은 2017년도 대비 건설비는 828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토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는 각각 △179억 2,200만원, △4억 3,200만원 감소하였음

- 유치원의 경우, 159억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정책¹⁶⁰⁾에 따라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8개원¹⁶¹⁾ 신설 및 7개원의 11학급 증설을 위하여 건설비 158억 5,200만원과 내부비품비 6,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160)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 2.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중 정책과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015~2018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 p50)

161) 단설 3교(향동유, 운중유, 사당유) 및 병설 5교(우신초병유, 정심초병유, 송정초병유, 신봉초병유, 장위초병유)

- 초등학교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여 4개교(녹원초, 천이초, 향동초, 가락일초·중) 신설 및 18개교의 301학급 증설¹⁶²⁾을 위하여 건설비(592억 8,900만원) 및 내부비품비(6억 1,200만원) 등 599억 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중학교 신·증설은 4개교(내곡중, 마곡2중, 향동중, 신길중)의 신설 및 3개교의 22학급 증설을 위해 토지매입비(217억 6,700만원), 건설비(151억 7,100만원) 및 내부비품비(2억 3,200만원) 등으로 371억 7,000만원 편성된 것임
 - 고등학교 신설은 기추진 중인 거여고와 공향고(이전)의 건설비로 18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 가칭)산빛초 및 가칭)고이초 신설을 위해 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1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¹⁶³⁾됨
-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별 설명자료¹⁶⁴⁾에서 학교 신·증설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절차 이

162) 교실증축사업 중 휴교 후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학교

학 교 명	가 락 초	강 덕 초	고 일 초
휴 교 사유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강동구 고덕주공 4~7단지 재건축
휴 교 일	2014. 03. 01. 휴교	2016. 03. 01. 휴교	2018. 03. 01. 휴교
재 개 교 일	2019. 03. 01. 재개교	2019. 09. 01. 재개교	2019. 09. 01. 재개교
증개축규모	60(특1, 병유5)학급	43(특1, 병유5)학급	61(특1, 병유4)학급
편 성 액	65억 4,000만원	25억 5,000만원	82억 7,500만원

163)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64) 사업별 설명자료(2-2) p.1698

행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가칭)산빛초는 2020년 9월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의 3,757세대 1,312명의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송파구 장지동에 42학급(특수1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2017년도 7월 자체투자심사 통과 후 8월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설립시기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2018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 예정임
 - 가칭)고이초는 2020년 3월 입주예정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및 고덕주공4단지 일부의 4,193세대, 1,374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강동구 상일동에 43학급(초40, 병유3) 규모로 설립될 계획인 바, 2017년도 4월과 8월에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설립시기 조정 및 병설유치원 편성의 사유로 보류되어 2017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예정으로 확인됨
- 해당 학교 개교일정 등이 고려될 필요는 있으나, 예산편성은 절차적 요건을 선행한 이후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은 감액하고 절차 이행 후 추경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1〉 학교신·증설 학교급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급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A-B)		2018년도 주요편성내역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합계	52	161,823	69	97,327	△17	64,496		
유	15	15,915	35	24,233	△20	△8,318	단설 3교(항동, 운중, 사당) 및 병설 5교 신설	13,850
							7개원 11학급 증설	2,065
초 ^{주1}	22	59,901	23	18,538	△1	41,366	기추진 2교(녹원, 천이) 및 신규 2교(항동, 가락일초중) 신설	27,876
							18개교 301학급 증설 (가락, 강덕, 고일 등 3교 164학급 증개축 포함)	32,025
중	7	37,170	3	14,283	4	22,887	기추진 2교(내곡, 마곡2) 및 신규 2교(항동, 신길) 신설	34,018
							3교(상암, 송례, 마곡) 22학급 증설	3,152
고	2	18,077	4	38,097	△2	△20,020	기추진 1교(거여) 신설 및 기추진 1교(공항) 이전	18,077
특수	4	28,846	-	-	4	28,846	기추진 2교(서진, 나래) 신설	28,328
							2교(광진, 정인) 5학급 증설	517
기타	2	1,914	4	2,176	△2	△262	신규 2교(고이초,산빛초) 신설 설계비	1,914

주1. 가락일초·중통합학교 포함

③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별 설명자료 p.1799, 1827)

- **학교시설증개축**(교육시설안전과)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 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845억 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7년도(396억 8,900만원) 보다 448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3-52〉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내역

(단위 : 교,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84,502	39,689	44,813	112.9	84,502	-	
강당 겸 체육관	학교수	68	46	22	47.8	68	-
	예산액	75,590	30,154	45,436	150.7	75,590	-
기타증축	학교수	13	24	△11	△45.8	13	-
	예산액	8,912	9,535	△623	△6.5	8,912	-

-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은 68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위해 755억 9,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설계공모보상비 및 설계비로 48억 700만원, 시설비로 705억 4,300만원, 내부비품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1교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¹⁶⁵⁾’에 따라 체육관 증축 대상연도(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165)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 6.10.)

- 2018년도에 68개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2014~2018년도 대상 103개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9개교¹⁶⁶⁾를 제외하고 모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3〉 강당겸체육관 대상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교)

대상연도		대상 학교수	기편성 (일부편성 포함)	금회 편성 ^{주1}	미편성 ^{주2}
합 계		162	54	68	26
2014 ~ 2018 대상	소 계	103	51	43	9
	2014년도 대상	21	21	0	-
	2015년도 대상	21	13	7	1 (고일초)
	2016년도 대상	20	14	4	2 (가락초, 도곡중)
	2017년도 대상	21	1	16	4 (금호여중, 배문고, 풍납초, 반포중)
	2018년도 대상	20	2	16	2 (재동초, 등명초)
2019 ~ 2021 대상	소 계	57	3	23	31
	2019년도 대상	21	-	12	9
	2020년도 대상	20	3	6	11
	2021년도 대상	16	-	5	11
기부채납 등 (신남초, 녹번초)		2	-	2	-

주1. 금회 편성된 68개교는 증축공정상 기편성(확보)액이 있더라도 '기편성' 란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주2. 현재까지 예산편성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수

166) 강당겸 체육관 증축사업 2014~2018년도 대상 중 미편성 9개교의 미편성 사유

대상연도	미편성 학교	미편성 사유
2015년도 대상	고일초	고덕아파트재건축으로 기부채납 추진중
2016년도 대상	가락초	병설유치원, 특별교실, 급식실, 체육관 증축의 복합시설 추진중
	도곡중	복합화추진 협의중
2017년도 대상	금호여중	공유재산 심의 보류
	배문고	이전계획 검토중
	풍납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필요
	반포중	반포1·2·4지구 재건축조합과 개축 협의중
2018년도 대상	재동초	부지협소로 학교 반대
	등명초	통폐합 검토중

- 아울러, 2019년도 이후 대상사업(57개교) 중 일부(23개교)에 대해서도 2019년도 중 준공 목표로 설계비를 편성한 바, 당초의 2021년도까지 1교 1체육관 확보 계획은 2019년도 중에 조기 완료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¹⁶⁷⁾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제출된 학교가 68개교(755억 9,000만원) 중 40개교(439억 7,000만원)¹⁶⁸⁾에 이르며, 지난 11월 29일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제출하면서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도 제출하는 절차적 불합리성을 반복하고 있는 바,
- 지난 2013년도에 강당겸체육관 증축 중장기계획을 수립¹⁶⁹⁾하여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사전에 완료할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심의 요청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식될 수 있어 교육청 차원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168)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금번 제277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169)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 6.10.)

④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1559~1587)

- **학교급식환경개선**(체육건강과)은 HACCP¹⁷⁰⁾시스템에 부합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832억 5,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7년도(371억 2,400만원) 보다 124.3%, 461억 3,3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54〉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A-B)	증감률 (A/B)	자체재원	목적지정	
합 계	83,257	37,124	46,133	124.3	77,257	6,000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물 량	47	32	15	46.9	47	-
	예산액	47,807	17,924	29,883	166.7	47,807	-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물 량	188	26	162	736.3	65	123
	예산액	12,222	3,361	8,861	263.6	6,222	6,000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물 량	367	283	84	35.3	367	-
	예산액	22,558	14,759	7,799	52.8	22,558	-
신규 학교 조리기구구입	물 량	3	5	△2	△40.0	3	-
	예산액	670	1,080	△410	△38.0	670	-

-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은 47개교(초 28교, 중 14교, 고 5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하여 2017년도(179억 2,400만원) 보다 166.7%, 298억 8,300만원 증액한 478억 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70)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학생식당 보유율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는 71.8%에 이르고 있고 중·고·특수학교의 경우 이를 상회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보유율은 5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학생수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식당 설치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5〉 학생식당 보유 현황

2017.10. 기준

(단위 : 교, %)

급 별	초	중	고	특수	계
학 교 수	602	381	321	27	1,331
보유학교수	321	300	310	24	955
비 율	53.3	78.7	96.6	88.9	71.8
미설치학교수	281	81	11	3	376
비 율	46.7	21.3	3.4	11.1	28.2

- 다만, 북가좌초 등 14개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143억 8,6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예정¹⁷¹⁾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지난 11월 29일 교육위원회의 심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심의 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바, 업무 처리상 사전에 준비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1)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금번 제277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 **노후급식시설개보수**는 조리실 리모델링, 냉난방기·보일러·덤웨어 교체 등 188개교의 노후급식시설개선을 위해 2017년도 (33억 6,100만원) 대비 263.6%, 8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200만원을 편성한 바,
 - 주된 증액 사유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개보수사업인 독립문초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대수선(17억 1,300만원)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6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은 조리기구의 노후도 및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367건, 225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2017년도 (147억 5,900만원) 보다 52.8%, 77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 365개교의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개보수에 따른 신규 기계·기구 구입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조리기구 교체비 224억 5,800만원과 긴급 노후조리기구 교체·확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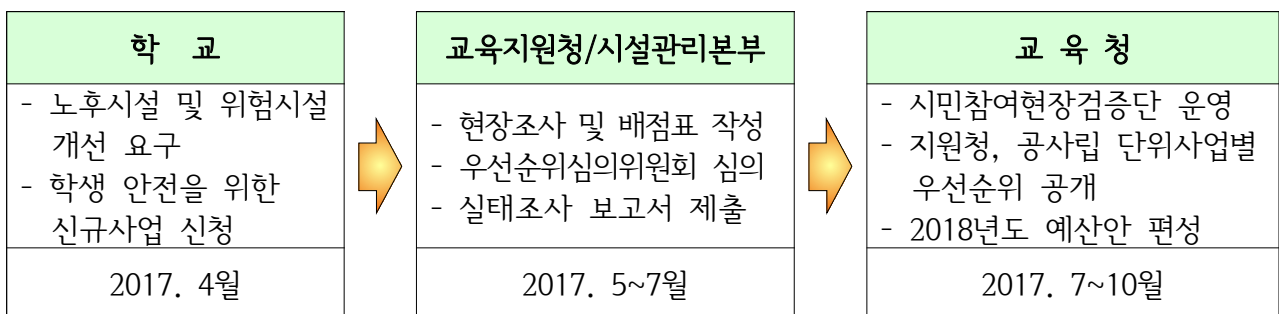
-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은 2018년도에 개교¹⁷²⁾하는 서울양재유치원·녹원초·내곡중 등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72) 서울양재유치원 2018.09. 개교, 녹원초 2018.09. 개교, 내곡중 2018.03. 개교

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1833)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의 **노후시설개선**은 노후교사 개축, 화장실, 전기, 냉난방시설 등 14개 분야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2017년도(2,678억 7,400만원) 보다 576억 1,100만원이 증액된 3,254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학교가 노후시설 또는 위험 시설 개선을 요구한 시설사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노후도, 관리상태, 안전성 등)와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안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표 3-56〉 노후시설개선사업 예산편성 추진 절차



- 학교의 무관심 또는 전문 지식 부재 등으로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없어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사업별로 내용연수 경과 등 시설물의 노후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후시설개선** 사업 중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위해환경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사업은 노후시설개선비(3,254억 8,500만원)의 29.2%인 950억 9,400만원을 편성한 바, 2017년도(540억 7,000만원) 보다 75.9%, 410억 2,4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3-57〉 노후시설개선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물량	편성액 (A)	물량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체 재원	목적 지정
합 계	1,530	325,485	1,801	267,874	57,611	21.5	321,535	3,950
노 후 교 사 개 축	1	240	-	-	240	순증	240	-
화 장 실 개 선	108	27,523	208	21,618	5,905	27.3	27,523	-
전 기 시 설 개 선	204	26,541	14	1,972	24,569	1,245.9	26,541	-
냉 난 방 개 선	78	18,624	132	26,131	△7,507	△28.7	18,624	-
창 호 개 선	99	26,776	95	24,287	2,489	10.2	26,776	-
외 벽 개 선	54	21,028	51	20,837	191	0.9	18,228	2,800
소 방 시 설 개 선	46	6,166	51	4,740	1,426	30.1	6,166	-
방 수 공 사	152	14,730	146	13,000	1,730	13.3	14,730	-
바 닷 개 선	58	13,317	71	13,696	△379	△2.8	13,317	-
도 장 공 사	177	7,943	94	4,778	3,165	66.2	7,193	750
외 부 환 경 개 선	97	9,242	96	8,030	1,212	15.1	9,242	-
기 타 사 업	190	48,132	706	67,737	△19,605	△28.9	47,732	400
장 애 인 편 의 시 설	88	10,129	43	6,978	3,151	45.2	10,129	-
안 전 관 리	178	95,094	94	54,070	41,024	75.9	95,094	-

- 안전관리 사업은 세부적으로 내진보강 401억 2,200만원, 석면제거 및 교체 475억원, 샌드위치 패널 해소 37억 2,500만원,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38억 3,000만원으로 구분되며
- 내진보강의 경우 전체소요액(7,102억 8,300만원)의 5.6%, 석면제거 및 교체(전체소요액 3,283억원)는 14.5%, 샌드위치 패널 해소(전체소요액 237억 5,700만원)는 15.7%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¹⁷³⁾,
- 2017년 11월 기준 학교시설 내진률은 26.5%(전체 3,469동 중 920동)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은 2,549동, 7,102억 8,300만원에 이르는 바¹⁷⁴⁾,
- 서울시교육청은 2034년도 완료를 목표로 향후 18년간 매년 400억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141개동의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¹⁷⁵⁾,
- 지난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우선 2019년도까지 이재민대피소로 활용할 학교건물 723동의 내진보강을 마치고 늦어도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함¹⁷⁶⁾
- 석면제거 및 교체의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률은 88.5%

173)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74)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75)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76)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진보강 2030년까지 마친다...매년 516억 투입(연합뉴스, 2017.11.21.)

- (전체 1,625교 중 1,438교)로 개선이 필요한 1,438개교에 대해 2027년도 완료를 목표로 매년 300억원을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145개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¹⁷⁷⁾
- 또한, 샌드위치 패널 해소 사업은 254개소(19,135㎡) 중 기 해소 물량을 제외한 140개소에 대해 2018년도부터 8년간 14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까지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⁷⁸⁾
 - 안전관리의 경우, 재정 여건상 1개 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정해진 제한물량을 해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기시설개선은 LED조명기구 교체 설계비 및 임차료(184억 2,600만원), 노후 방송시설·수배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265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1,274개교의 LED조명기구 전면 교체를 목표로 2016년 5월에 렌탈방식¹⁷⁹⁾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¹⁸⁰⁾, 그 사업비는 10년간 상환¹⁸¹⁾할 예정인 바,

177)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78)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

179) 임대사가 민간금융으로 LED를 설치하고 투자금액은 임대기한 동안 전기 절감액으로 회수하는 방식

180) LED조명기구 설치사업 추진계획(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3324, 2016.05.24)

-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까지 기존 조명기구를 LED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재정사업(4,270억원 소요)이 아닌 렌탈방식(1,097억원 소요)으로 추진

181) 70%는 LED교체에 따른 절감분 재원으로 상환하고 30%는 재정지원으로 상환

- 2017년도의 경우 제1회 추경을 통해 275교 23,409실에 대한 설계비와 렌탈비로 6억 3,600만원을 편성¹⁸²⁾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16교의 26,821실에 대한 설계비와 렌탈비 184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사업은 교육지원청별 현안사업 해소 포괄사업비 68억 5,900만원¹⁸³⁾, 친환경운동장 조성(11교) 24억 7,400만원, 꿈을 담은 교실 66억원, 행복한 학교공간 만들기 33억원, 냉난방 화학세척 21억 6,100만원 등 481억 3,600만원을 편성한 바
- 친환경운동장 조성¹⁸⁴⁾의 경우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례¹⁸⁵⁾가 있다는 점에서 운동장 조성(교체)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82) LED조명기구 교체(LED 렌탈사업) 예산 편성 경과

2016. 11.	서울시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 - LED 렌탈사업비(설계비 및 임차비) 86억원 편성
2016. 12.	우리 의회	LED 렌탈사업비 전액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의결 - 동 사업의 안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 필요
2017. 3~4.	서울시교육청	LED렌탈사업 타당성 검증TF 운영 및 소관 상임위 보고회 실시 - 동 사업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사업성 등에 대한 검증
2017. 6	서울시교육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 LED 렌탈사업비(설계비 및 임차비) 6억 3,600만원 편성
2017. 6.	우리 의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 LED 렌탈사업비에 대해 교육청 제출안대로 의결

183) 2017년도 55억원 대비 13억 5,900만원 증액, 교육지원청별로 규모(학교수)에 따라 5억원~7억1,800만원까지 편성

184) 2013년도에 수립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인조잔디운동장 관련 향후 관리방안(체육건강청소년과-13978, 2013.07.08)에 따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시 친환경(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

185) 용두초의 경우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친환경운동장 조성(3억 2,500만원) 예산을 학교 연관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집행(인조잔디운동장→친환경(마사토)운동장)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승인 요청함

- 이후 동일·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성이 없는 다양한 소재(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 기타 등)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주 시에서 공공체육시설 10개소의 유해성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으로 전면 교체 완료한 사례¹⁸⁶⁾가 있어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86) 2017.6.12. 환경일보 기사

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1913, 1916)

○ **교육지원청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 편성액은 56억 1,300만원으로 2017년도(30억 3,300만원) 대비 85.1%, 25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청사증축비(18억 9,300만원)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Wee센터이전 신축 및 사무공간확충비(19억 3,500만원)가 주된 증액에 해당함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증축은 청사시설 노후화 및 회의실 민원인 접견실 등 사무공간 확충 요구를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¹⁸⁷⁾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¹⁸⁸⁾에 따라 2016년 10월 공유재산 심의회(가결)¹⁸⁹⁾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에 18억 9,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Wee센터이전 신축 및 사무공간 확충 사업은 현재 동작관악Wee센터의 접근성 및 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¹⁹⁰⁾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회의실 및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내로 동작관악Wee센터를 이전 신축

18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8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이하 생략)

18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6.10.20.)

190) 현재 동작관악Wee센터는 신림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 내 위치, 부분임대(연간 임대료 720만원)하여 사용중으로 지하철역에서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집단상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이수기관에 연계하고 있고, 비상구를 막고 센터공간을 확보해 소방법 위반의 문제점이 있음

하고 청사내 회의실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¹⁹¹⁾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¹⁹²⁾에 따라 2017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가결)¹⁹³⁾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에 19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직속기관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 편성액은 94억 400만원으로 2017년도(64억 1,100만원) 대비 85.1%, 29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학생교육원의 영월폐교 유희부지 캠핑장 조성 및 캐러번 구입(7억 5,900만원)과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공간 및 교직원 숙소 증축(8억 2,500만원)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신축(이전)비(12억원)의 편성이 주요 증액내역에 해당함

- 학생교육원의 영월폐교 유희부지 캠핑장 조성¹⁹⁴⁾과 대성리교육원 실내 교육공간 및 교직원 숙소 증축¹⁹⁵⁾은 2017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가결)¹⁹⁶⁾를 거쳐 편성된 것이며

19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9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이하 생략)

19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7.10.12.)

194) 학생교육원 영월폐교 유희부지 캠핑장 조성 및 캐러번 구입 : 2013년도에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폐교부지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사용하다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연수·체험·힐링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캐러번이 설치된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

195)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 실내 교육공간 및 교직원 숙소 증축 : 학생수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실내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우천 등 기상상태에 따른 교육활동에 제약이 크고 현재 직원 숙소가 미등기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직원 숙소 확보를 위해 증축하는 사업

19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7.10.12.)

- 교육시설관리본부 신축(이전)은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로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한강중학교 부지 내로 증축하여 이전하고자 설계비 및 시설비를 편성(12억원)한 것임
- 동 사업은 2017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가결)¹⁹⁷⁾ 및 11월 재정투자심사(가결)¹⁹⁸⁾를 거쳐 2018~2022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반영¹⁹⁹⁾되었고, 지난 11월 29일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제출되고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²⁰⁰⁾된 것은 “선예산 편성 후 절차이행” 사례에 해당되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9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7.10.12.)

198) 2017년 제5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2017.11.09.)

199) 2018~2022년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53

200) 의안번호 2166 :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사업별 설명자료 p.1793)

- 지방교육채상환은 「지방재정법」 제11조201)에 의하여 교원명예퇴직,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환경개선 등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89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3-58〉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8,931	81,908	△42,977	△52.5
원금상환	-	43,694	△43,694	△100.0
이자상환	38,931	38,214	717	1.9

- 원금상환의 경우, 2013년도에 학교신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202)에 대하여 2018년도분 분할상환액(436억 9,400만원)

201)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202) 2013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사업명	발행액	상환방법	연도별 상환액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2013	2013 학교신설	131,08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3,694	43,694	43,694	131,082

을 2017년도 중에 조기 상환²⁰³⁾하였고, 추가로 2018년도에 상환할 지방채 원금도 발생하지 않아 미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상환의 경우, 2017년도 중 조기 상환 등 원금 상환으로 인해 이자를 부담해야할 원금은 감소(△2,395억 5,600만원)하였으나, 2018년도 금리 인상 예상²⁰⁴⁾에 따른 이자 상환액 증가로 2017년도(382억 1,400만원) 보다 7억 1,700만원 증액된 389억 3,100만원을 편성함

〈표 3-59〉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산편성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전년도 말 지방채(원금) 잔액	1,326,110	1,565,666	△239,556
적용 이자율 (발행사업별 평균)	3.15	2.45	0.7

-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대출금리는 지방채 발행 당시의 금고약정서에 의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하도록 한 바, 향후 발행될 지방채의 이자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금고 지정²⁰⁵⁾시 교육청에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3) 2013년도 학교신설 지방채의 상환예산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사업명	발행액	상환방법	상환예산			
				2016년도	2017년도 본예산	2017년도 제2회추경	계
2013	2013 학교신설	131,08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3,694	43,694 (1월 상환)	43,694 (11월 상환예정)	131,082

204) 골드만삭스 “ 한국, 내년에도 3%대 성장 전망...기준금리 3차례 인상 예측”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1.50%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내년 2분기 1.75%, 내년 4분기 2.00%로 세 차례 인상을 예측했다.(뉴시스, 2017.11.27. 기사 발췌)

205) 현재 교육금고 약정기간은 2017~2020년으로 4년마다 교육금고 지정함

- 2017년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연도 중 발행된 지방채 없이 2,395억 5,600만원의 원금 상환만 이루어져 2016년도 말(1조 5,656억 6,600만원) 보다 △2,395억 5,600만원이 감소한 1조 3,261억 1,0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60〉 2017년도말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 연도	사업명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증감		2017년도말 현재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간 상환액)
			발행 (A)	상환 (B)		최초	최종	
합 계		1,565,666	0	239,556	1,326,110			
2013	2013 학교신설	87,388	0	87,388	0	2016	2018	2년거치 3년분할
2014	2014 학교신설	59,514	0	0	59,514	2020	2029	5년거치 10년분할 (60억원)
	09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차환	182,629	0	76,420	106,209	2020	2029	5년거치 10년분할 (106억원)
2015	교원명예퇴직	256,175	0	0	256,175	2020	2030	5년거치 10년분할 (256억원)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0	0	268,763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269억원)
	교부금차액보전 (누리 과정)	137,722	0	75,748	61,974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62억원)
	2015 학교신설	152,410	0	0	152,410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 (152억원)
2016	교육환경개선	217,414	0	0	217,414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217억원)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0	0	152,638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152억원)
	2016 학교신설	51,013	0	0	51,013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 (51억원)

- 2014년도 이후 발행한 9건의 지방채 상환조건은 모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동 지방채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2020년도 부터 상환규모가 증가되어 2016년도 발행 지방채의 원금 상환 이 시작되는 202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1〉 2017년도말 기준 지방교육채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		원 금	이 자	비 고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2018	38,931	-	-	38,931	
2019	38,931	-	-	38,931	
2020	55,503	42.6	16,572	38,931	2014년도 발행 원금 상환 시작
2021	128,854	132.2	90,503	38,351	2015년도 발행 원금 상환 추가
2022	168,122	30.5	132,608	35,514	2016년도 발행 원금 상환 추가
2023	164,230	△2.3	132,608	31,622	
2024	160,338	△2.4	132,608	27,730	
2025	156,443	△2.4	132,608	23,835	
2026	152,553	△2.5	132,608	19,945	
2027	148,659	△2.6	132,608	16,051	

- 그러나 2017년도에 승인된 지방채(1,334억 4,000만원)를 이월하여 2018년도에 발행²⁰⁶⁾ 예정인 바, 동 지방채의 원금

206) 2018년도 발행예정 지방채(2017년도 승인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승인)액	발행예정일	이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상환재원
교육환경개선비	133,440	2018년도 중	2.6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최초 : 2024년도 최종 : 2033년도	국가부담 (교육부)

* 지방채 승인 신청시 예정이율이며 실제 지방채 발행시점의 이율이 적용되어 6개월마다 변동될 예정

상환이 시작되는 2024년도에는 상환액이 다시 증가하여 1,771억 9,200만원²⁰⁷⁾에 이를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채는 자체부담 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보통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될 수밖에 없어 상환 완료 시까지 교육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207) 2014~2016 발행 지방채 원리금(1,603억 3,800만원) + 2018 발행예정 지방채 원리금(168억 5,400만원) = 1,771억 9,200만원

※ 2018년도말 기준 지방교육채(1조 4,595억 5,000만원)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		원 금	이 자	비 고
	원리금	전년 대비 증 감 률			
2018	38,931	-	-	38,931	
2019	38,931	-	-	38,931	
2020	55,503	42.6	16,572	38,931	2014년도 발행분 원금 상환 시작
2021	128,854	132.2	90,503	38,351	2015년도 발행분 원금 상환 추가
2022	168,122	30.5	132,608	35,514	2016년도 발행분 원금 상환 추가
2023	164,230	△2.3	132,608	31,622	
2024	177,192	7.9	145,952	31,240	2018년도 발행분 원금 상환 추가
2025	172,946	△2.4	145,952	26,994	
2026	168,705	△2.5	145,952	22,753	
2027	164,460	△2.5	145,952	18,508	

(6)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326)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²⁰⁸⁾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²⁰⁹⁾’가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²¹⁰⁾에 따라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의·선정으로 운영됨
 - 2018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도(13억 5,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3억 2,000만원이 편성된 바, 본청 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1개 교육지원청 사업은 2억 2,000만원을 증액(교육지원청 당 2,000만원) 편성된 것임

208)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9)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2) p.1863

210)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3-62〉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320	1,350	△30	△2.2
본 청	0	250	△250	△100.0
지 원 청	1,320	1,100	220	20.0

- 금년도에 비해 지원청별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나, 지원청별 반영률의 차이가 커 향후 반영률을 높여 주민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3〉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교육지원청	신 청		2018년도 예산안		
	사업수	신청액(A)	사업수	예산액(B)	반영률(B/A)
합 계	138	4,704	63	1,320	28.1
동 부	14	571	7	120	21.0
서 부	20	512	6	120	23.4
남 부	11	362	5	120	33.1
북 부	10	279	7	120	43.1
중 부	10	225	6	120	53.3
강동송파	13	328	4	120	36.6
강서양천	10	253	6	120	47.4
강남서초	14	297	5	120	40.4
동작관악	12	1,426	3	120	8.4
성동광진	11	144	6	120	83.3
성북강북	13	307	8	120	39.1

(7) 명시이월

-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55건, 1,005억 5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명시이월 규모는 2016년도(104건, 1,074억 3,700만원)보다 △6.5%, △69억 3,2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64〉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명 시 이 월				
		건 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	
			비율(B/A)	증감액	증감률	
2017	8,147,725	115	100,505	1.2	△6,932	△6.5
2016	8,001,287	104	107,437	1.3	28,947	36.4
2015	7,690,091	113	79,550	1.0	-	-

- 명시이월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²¹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의회 예산감시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사료됨
- 다만, 명시이월 승인 요청액의 95.9%, 964억 1,000만원이 시설 사업이며 이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94건, 750억 7,300만원)²¹²⁾의 경우, 학사일정 고려, 관련 공사와 병행 추진 등의 사유로 이월을 요청한 바, 이는 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21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2) 본예산 : 20건, 365억 2,200만원 / 추경예산 : 74건, 385억 5,100만원

사업비를 우선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만 편성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5〉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 개 축	학교신증설	기타사업	계(B)
명시이월액 (A)	8,742	54,665	26,853	6,150	4,095	100,505
비율 (A/B)	8.7	54.4	26.7	6.1	4.1	100.0
요구건수	16	89	25	6	19	155

가. 내진보강 관련 (명시이월 372억원)

- 당초 7월경 성능평가 및 검증용역을 완료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대상 결정 후 내진보강을 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수행 중 이재민 대피수용시설 내진보강 기준 강화²¹³⁾에 따른 건축물 최소성능목표 상향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을 변경하여 재수행한 바 과업수행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내진보강공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213) 학교시설 내진성능목표 및 중요도계수 적용기준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5077, 2017.06.20.)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 연면적 1,500㎡ ~ 10,000㎡의 학교시설은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내진등급 (특)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등급 I 을 적용
- 건축구조기준 : 학교시설은 중요도 I 로 분류되나, 학교시설이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에 속한다면 더 높은 중요도 (특)으로 분류

〈표 3-66〉 내진보강 관련 명시이월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명시이월 요구사유	구분
계	37,200	37,200		
내진보강 공사	26,520	26,520	이재민 대피수용시설 내진보강 기준 강화 (내진등급 1 → 내진등급 특)에 따른 건축물 최소성능목표 상향으로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기간 연장 및 내진보강 대상증가로 연내 보강공사 불가능	본예산
내진보강 공사	4,480	4,480	내진보강 기준 강화에 따른 내진보강 대상증가로 '17년 보강공사 부족분 추경 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추경
내진성능 평가	4,650	4,650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18년 내진성능평가용역 조기집행 예정으로 '17년 2차 추경으로 '18년 대상사업 내진성능평가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추경
내진성능 평가검증	1,550	1,550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18년 내진성능평가검증용역 조기집행 예정으로 '17년 2차 추경으로 '18년 대상사업 내진성능평가검증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추경

-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²¹⁴⁾으로 내진보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인 바,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²¹⁵⁾한 내용과 같이 내진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적기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됨

214)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1990년 이후 15차례”(연합뉴스, 2017.11.20.)

215) 서울교육청, 학교 내진보강 2030년까지 마친다...매년516억 투입(연합뉴스, 2017.11.21.)

- 지진 발생시 이재민대피소로 활용할 학교건물 723동의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마치고 늦어도 2030년까지는 내진성능을 갖춰야 하는 학교건물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보강 작업을 끝낼 계획임

나. 강당겸체육관 (명시이월 241억원)

○ 거주초 등 16개교²¹⁶⁾ 강당겸체육관 증축사업은 설계공모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 및 관련 공사 병행추진 등을 사유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요구서를 제출한 바,

- 강당겸체육관 증축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기에 연도 내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가칭)항동유치원 신설 (명시이월 46억원)

○ 구로구 향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신설되는 가칭) 항동유치원²¹⁷⁾(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향동 소재, 9학급)은 201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향동지구 입주시기 변경²¹⁸⁾에 따라 개원 시기도 조정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216) 초등학교(7교) : 거주초, 난곡초, 남명초, 매봉초, 성서초, 용두초, 청담초
중학교(8교) : 삼정중, 신구중, 영남중, 월촌중, 이수중, 전동중, 천일중, 풍성중
고등학교(1교) : 세그루패션디자인고

217) 가칭)항동유치원 현황

위치	유아수	학급수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구로구 향동 159	240	9(1)*	1,600	2,673

* ()는 특수학급 수로 본수에 포함

218) 항동초등학교 개교관련 업무 협조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1122, 2017.04.13.)
- 개교일정 : (변경 전) 2018. 9월 → (변경 후) 2019. 3월
- 입주시기 : (변경 전) 2018. 5 ~ 9월 → (변경 후) 2018. 9 ~ 2019. 4월

IV.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개 요

- 성인지 예산제도²¹⁹⁾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²²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조²²¹⁾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를 2018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219)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교육부, 2017.9.)」 p.113
성인지 예산서 작성

220)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안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8개 사업에 1,564억 2,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017년도의 경우 28개 사업, 1,427억 5,700만원²²²⁾을 편성한 바, 사업 수는 금년도와 동일하나 예산 규모는 9.6%, 136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4-1〉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규모			
		2018 ㉠	2017 ㉡	증감 ㉠-㉡	2018 예산안(A)	2017 본예산(B)	증감	
							증감액 (A-B)	증감률
합계		28	28	0	156,427	142,757	13,670	9.6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주1}	9	9	0	76,961	61,558	15,403	25.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주2}	6	6	0	25,088	25,412	△324	1.3
	교육부 지정사업 ^{주3}	11	12	△1	53,631	55,648	△2,017	3.6
선택	자체사업 ^{주4}	2	1	1	747	139	608	437.4

- 주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
- 주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주3. 교육부지정사업 : 교육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 통보
- 주4. 자체사업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액의 경우,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²²³⁾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안²²⁴⁾과 차이가 있는 바, 동일 함

2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06(2017.11.10.)호

223)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p.6 : 성인지 예산액 1,427억 5,700만원

224)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6 : 성인지 예산액 1,515억 1,300만원

목이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²²⁵⁾은 자료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 성인지대상 사업은 28개로 2017년도와 사업 수는 동일하나, 1개 사업이 추가되고, 1개 사업이 폐지되어 사업 수의 변동은 없으나, 2개 사업의 성인지 사업명 및 성인지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제출한 것임

〈표 4-2〉 성인지대상 사업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예산(B)	증 감 내 역	
				증감(A-B)	증감률
추 가	오디세이 학교 운영	622	673	△51	△7.6
폐 지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97	5	92	1,840.0

- **오디세이학교운영**(6억 2,20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추가된 사업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를 위하여 오디세이학교 재학생의 균등한 성비율 유지를 성과목표²²⁶⁾로 설정하고 있음
- **청소년단체활동지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2018년도 교육부 지정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기재²²⁷⁾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삭제하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5) 신규 추가된 성인지 대상사업 및 성과지표 변경으로 새로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면 에듀파인 시스템(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226) 성과지표 : 오디세이학교 여학생 비율(2017년도 54.7% → 2018년 50.0%)

227)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기준(교육부, 2017.9.) p.57

V.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개 요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²²⁸⁾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포함²²⁹⁾시키고 있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교육부)」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한 것임

22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9)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에 도입되어 시범 작성한 후 201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함

2.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 총괄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임무로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이룩한다’로 설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2018년도의 경우, 서울교육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22개의 성과목표, 94개의 단위과제, 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18년도 단위과제 예산액(2조 5,590억 5,700만원)은 총 예산액(9조 1,027억 6,400만원) 대비 28.1%를 차지하여 2017년도(22.3%)보다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22	22	0
	성과지표 수	76	71	5
	단위과제 수	94	94	0
예산액	총 예산액 (㉠)	9,102,764	8,147,725	955,039
	단위과제 예산액(㉡)	2,559,057	1,767,440	744,302
	설정비율 (㉡ / ㉠)	28.1	22.3	5.8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2조 5,590억 5,700만원으로 2017년도(1조 8,147억 5,500만원)보다 7,443억 200만원이 증가된 바,

- 이는 성과관리 대상사업 중 전략목표Ⅱ²³⁰⁾와 전략목표Ⅳ²³¹⁾의 증액(6,315억 9,900만원)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됨

〈표 5-2〉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C)	2017년도 본예산 (D)	증감 (C-D)	재원비중
합 계 (A+B)		9,102,764	8,147,725	955,039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소 계 (A)	2,559,057	1,814,755	744,302	28.1
	전략목표Ⅰ	282,985	218,862	64,123	3.1
	전략목표Ⅱ	1,011,214	633,433	377,781	11.1
	전략목표Ⅲ	88,236	80,568	7,668	1.0
	전략목표Ⅳ	1,069,524	815,706	253,818	11.7
	전략목표Ⅴ	107,098	66,186	40,912	1.2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소 계 (B)	6,543,707	6,332,970	210,737	71.9
	인력운영비	5,486,408	5,318,985	167,423	60.4
	기본운영경비	904,584	811,542	93,042	9.9
	지방채상환	39,017	81,995	△42,978	0.4
	BTL사업비	104,507	104,126	381	1.1
	예비비 등	9,191	16,322	△7,131	0.1

230) 전략목표Ⅱ(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와 연계된 세부사업 중 누리과정지원(3,653억원 증),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216억원 증) 등 총 3,777억원이 증액됨

231) 전략목표Ⅳ(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와 연계된 세부사업 중 학교신증설(644억원 증),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576억원 증), 학교급식환경개선(461억원 증), 학교시설증개축(448억원 증), 학기중급식 비지원(166억원 증) 등 총 2,538억원이 증액됨

(2) 성과지표 설정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7.9.)」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76개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하였고, 내용별²³²⁾로는 투입·과정지표보다는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5-3〉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측정여부별 분류		성격별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2	76	76	0	0	5	48	23
	(100.0)	(100.0)	(0.0)	(0.0)	(6.6)	(63.1)	(30.3)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임

232)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교육부, 2017.9.)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예 :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3) 목표치 설정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은 부적정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 실제 교육청의 성과지표 중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가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 품질 향상, 목표체계(성과목표-단위과제)와 예산사업 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 연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4〉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치 설정 사례

(단위 : %)

성 과 지 표	실적 및 목표치						비 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율	목표	신규	80.0	80.0	80.0	80.0	성과계획서 p.154
	실적	77.0	80.0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	목표	79.84	99.2	99.2	99.0	99.0	성과계획서 p.164
	실적	99.19	99.2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	목표	-	신규	52.2	52.2	52.6	성과계획서 p.172
	실적	-	53.4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목표	77.5	80.0	80.0	82.5	82.5	성과계획서 p.172
	실적	77.5	83.3				
정보보호 강화율	목표	-	신규	75.0	76.0	78.0	성과계획서 p.180
	실적	-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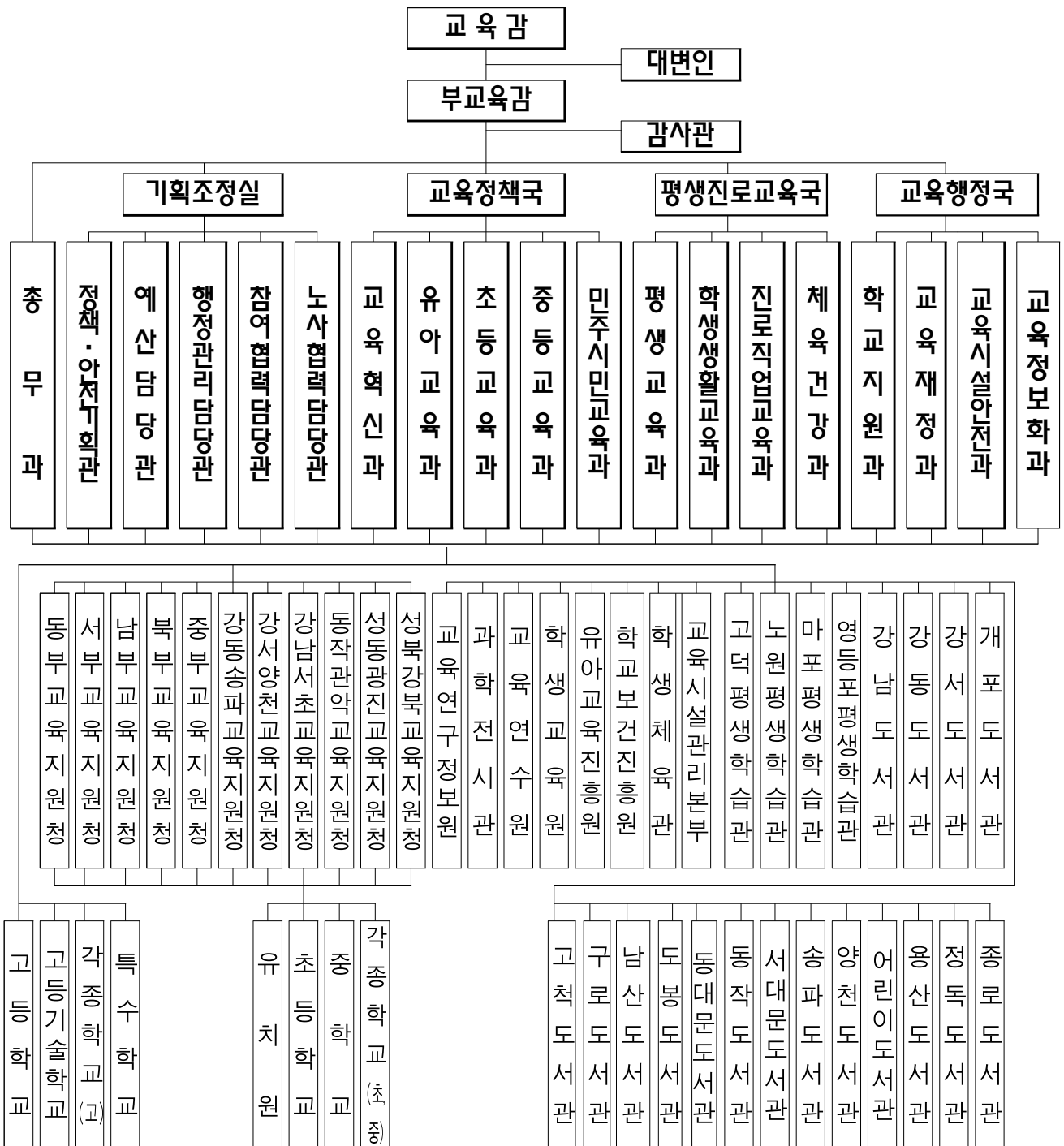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 현황
4. 목적지정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5. 2018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현황

1. 서울시교육청 일반현황

□ 조 직

- 본청: 1실 3국 7담당관 14과(21과·담당관)
- 교육지원청: 11개 청
- 산하기관: 29개 기관(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 정 원

- 정 무 직 : 1명
- 교원(공립) : 45,521명
- 교육전문직 : 460명
- 일 반 직 : 6,649명(일반직 6,635명, 연구직 14명)

□ 학교현황

2017.9.1. 기준

구분 학교별	학교수(교)				학급수(개)	학생수(명)	교원수(명)
	국립	공립	사립	계			
합 계	12	1,182	1,079	2,273	43,148	1,041,771	78,072
유 치 원	0	209	686	895	4,360	88,987	7,092
초등학교	2	562	39	603	18,625	428,333	29,169
중 학 교	2	273	109	384	8,883	227,001	17,595
고등학교	3	117	200	320	9,889	282,968	22,223
특수학교	3	8	18	29	784	4,412	1,529
각종학교 등	2	7	27	36	607	12,359	464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인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교원수 : 현원 기준으로 휴직, 파견, 기간제교사 포함

□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공익) 법인 현황

2017.9.1. 기준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비영리(공익)법인
개 소	1,810	15,411	10,899	1,25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100.0	955,039	11.7
유아및초·중등교육	8,700,124	95.6	7,782,062	95.5	918,062	11.8
인적자원운용	4,396,271	48.3	4,285,829	52.6	110,442	2.6
교수-학습활동지원	446,436	4.9	340,323	4.2	106,113	31.2
교육복지지원	1,262,435	13.9	903,735	11.1	358,700	39.7
보건/급식/체육활동	102,771	1.1	42,400	0.5	60,371	142.4
학교재정지원관리	1,920,402	21.1	1,804,885	22.2	115,517	6.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1,809	6.3	404,890	5.0	166,919	41.2
평생·직업교육	25,822	0.3	24,271	0.3	1,551	6.4
평생교육	25,120	0.3	23,357	0.3	1,763	7.5
직업교육	702	0.0	914	0.0	△212	△23.2
교육일반	376,818	4.1	341,392	4.2	35,426	10.4
교육행정일반	165,851	1.8	88,624	1.1	77,227	87.1
기관운영관리	58,252	0.6	50,325	0.6	7,927	15.8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43,524	1.6	186,121	2.3	△42,597	△22.9
예비비및기타	9,191	0.1	16,322	0.2	△7,131	△43.7

3. 교육사업비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교원연수운영	3,329	3,182	147	4.6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지원	3,454	3,088	366	11.9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2,231	1,442	789	54.7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4,174	3,702	472	12.8	중등교육과
교직원단체관리	397	472	△75	△16.0	노시협력담당관
교직원복지대여	87	40	47	115.9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6,375	5,494	881	16.0	총무과
비정규직인사관리	348	142	206	144.3	노시협력담당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641	1,471	170	11.5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950	891	59	6.6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35	317	118	37.3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630	940	690	73.4	총무과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교육지원	1,510	1,376	134	9.8	교육혁신과
검정고시관리	728	831	△103	△12.4	학생생활교육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3,674	10,575	3,099	29.3	교육혁신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6,508	4,093	2,415	59.0	중등교육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교과교육연구회지원	264	262	2	0.9	교육연구정보원
교과자료개발보급	169	145	24	16.0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678	1,703	△25	△1.5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운영	11,455	8,398	3,057	36.4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운영지원	3,418	3,235	183	5.6	교육연구정보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3,723	3,050	673	22.1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6,065	3,758	2,307	61.4	학생생활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4,945	5,024	△79	△1.6	중등교육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	715	883	△168	△19.0	민주시민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4,100	2,940	1,160	39.5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5,329	12,507	2,822	22.6	교육혁신과
방송통신중·고운영	1,721	1,448	273	18.8	중등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40,051	35,281	4,770	13.5	유아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575	613	△38	△6.2	교육연구정보원
수석교사제운영	897	1,445	△548	37.9	초등교육과
스마트교육지원	5,219	958	4,261	444.7	교육혁신과
연구시범학교운영	1,810	1,633	177	10.8	초등교육과
영재교육운영	438	151	287	188.5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원운영	3,863	3,467	396	11.4	교육혁신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4,066	1,791	2,275	127.0	중등교육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0,852	24,568	6,284	25.6	중등교육과
유아교육지원	2,709	2,046	663	32.4	유아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4,441	3,829	612	16.0	유아교육과
진로진학교육	6,309	4,051	2,258	55.7	진로직업교육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242	899	343	38.2	학교지원과
창의인성교육운영	373	210	163	77.6	중등교육과
체육육성종목지원	1,040	406	634	156.2	체육건강과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106	1,929	177	9.2	과학전시관
특색교육과정운영	90,997	68,581	22,416	32.7	중등교육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43,419	21,744	21,675	99.7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운영지원	790	797	△7	△0.8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3,618	790	2,828	357.6	진로직업교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3,744	2,599	1,145	44.1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3,060	12,688	372	2.9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운영	8,641	8,571	70	0.8	학생생활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021	10,435	△9,414	△90.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2,811	8,600	4,211	49.0	교육혁신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4,028	17,813	6,215	34.9	체육건강과
학교평가관리	475	401	74	18.5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예방지원	6,829	4,368	2,461	56.4	학생생활교육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학력평가관리	7,247	4,949	2,298	46.4	중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3,896	993	2,903	288.3	초등교육과
학생봉사활동지원	97	5	92	1,753.6	체육건강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3,500	12,327	1,173	9.5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7,572	3,880	3,692	95.2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수련활동지원	5,235	4,975	260	5.2	학생교육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7,441	12,279	5,162	42.0	초등교육과
교육복지지원					
교과서지원	52,144	56,108	△3,964	△7.1	교육혁신과
교육급여지원	44,185	57,457	△13,272	△23.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51,281	47,968	3,313	6.9	참여협력담당관
기타교육비지원	347	230	117	50.8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601,621	236,308	365,313	154.6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64,235	61,733	2,502	4.1	초등교육과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2,743	26,334	△3,591	△13.6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6,428	40,412	△3,984	△9.9	참여협력담당관
정보화지원	4,144	5,625	△1,481	△26.3	참여협력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5,628	7,290	△1,662	△22.8	참여협력담당관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1,503	42,712	△1,209	△2.8	진로직업교육과
학기중급식비지원	338,170	321,553	16,617	5.2	참여협력담당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보건/급식/체육활동					
체육대회지원	7,426	2,373	5,053	212.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403	364	39	10.8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	411	432	△21	△4.8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6,664	1,533	5,131	557.7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4,607	572	4,035	705.1	체육건강과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702	913	△211	△23.1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도서관운영지원	7,629	6,808	821	12.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10,308	10,190	118	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지원	7,181	6,358	823	12.9	평생교육과
교육행정일반					
감사관리	507	423	84	19.9	감사관
결산관리	85	77	8	10.4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6,767	25,429	11,338	44.6	교육재정과
교육정책기획관리	550	534	16	2.9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정책홍보	4,502	2,271	2,231	98.2	대변인
교육행정기록물관리	4,305	1,303	3,002	230.4	총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1,369	6,331	15,038	237.5	교육정보화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A)	2017년도 본예산(B)	증감		주관부서
			증감액 (A-B)	증감률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62	429	△67	△15.6	참여협력담당관
기관평가	39	21	18	84.9	정책안전기획관
대외교육협력관리	6	29	△23	△77.8	참여협력담당관
민원관리	734	701	33	4.7	총무과
법무관리	626	623	3	0.5	행정관리담당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30	96	34	35.5	총무과
사학기관관리	341	160	181	112.7	학교지원과
선거관리	32,038	3,180	28,858	970.4	총무과
시설사업관리	37,814	26,614	11,200	42.1	교육시설안전과
예산관리	954	745	209	28.1	예산담당관
의정활동지원	64	56	8	14.2	행정관리담당관
재무회계관리	5,895	2,071	3,824	184.7	교육재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689	854	△165	△19.4	학교지원과
정보보안관리	5,008	4,199	809	19.2	교육정보화과
조직및성과관리	258	166	92	55.0	정책안전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9,000	8,000	1,000	12.5	예산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761	4,855	△1,094	△22.5	참여협력담당관
행정개선활동지원	34	30	4	13.0	행정관리담당관

4. 목적지정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비 고
	사업수	편성액	
합 계	145	145,288	
특 별 교 부 금	121	78,590	
국 고 보 조 금	4	24,75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	32,965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	3,600	
기 타 지 원 금	3	4,745	
전 입 금	1	631	

□ 본예산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1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	58	
2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유아교육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	114	
3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605	
4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초중등정보공시운영	182	
5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시도교육청평가운영	18	
6	정책안전기획관	특 별 교 부 금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48	
7	예산담당관	특 별 교 부 금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153	
8	참여협력담당관	특 별 교 부 금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9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SW교육활성화지원	1,108	
10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180	
11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실안전관리강화	400	
12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과학중점학교지원	1,058	
13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무한상상실운영	143	
14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학생참여형수업모델학교운영	40	
15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학생탐구활동지원	179	
16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교원의행정업무경감	99	
17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학년)제운영계획지원	300	
18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학년)컨설팅 및 우수사례확산지원	335	
19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운영학교지원	8,370	
20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예술교육활성화	765	
21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교육격차해소 및 ICT역량 함양지원	26	
22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1,582	
23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미래형학교환경조성	2,942	
24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자율형공립고지원	784	
25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영재교육활성화	295	
26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190	
27	교육혁신과	특별교부금	혁신교육확산지원	756	
28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90	
29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사립유치원운영지원	124	
30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영유아사교육문화개선	45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31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교육력제고	114	
32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155	
33	유아교육과	특별교부금	학부모안심인증제	212	
34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과용도서활용강사요원연수	28	
35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연수선진화	9	
36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능력개발평가지원	10	
37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원존중풍토조성	6	
38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연구회운영	4	
39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한학기한권읽기역량강화연수	50	
40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현장적합성검토연구회운영	21	
41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방과후돌봄연계강화	188	
42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방과후돌봄운영내실화지원	33	
43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방과후돌봄활성화지원	212	
44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수석교사수업컨설팅네트워크	9	
45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기초학력향상지원	2,392	
46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중점학교운영 및 지역협력체계구축	78	
47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인성중심수업강화	42	
48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인성체육예술교육실천및 확산	350	
49	초등교육과	특별교부금	좋은수업나눔교사연구회	6	
50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행복한수학교육	411	
51	중등교육과	특별교부금	교과교실제학교운영지원	3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52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89	
53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교원의교육활동보호	98	
54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30	
55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독도교육활성화지원	3	
56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수업탐구교사공동체운영	207	
57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방송중고지원	490	
58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수석교사수업컨설턴트양성연수	9	
59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EBS영어교육방송지원	705	
60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5,712	
61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예술중점학교지원	100	
62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일반고교육역량강화	6,914	
63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학생평가내실화	1,057	
64	중 등 교 육 과	특 별 교 부 금	EBS수능강의운영지원	2,738	
65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역사교과연구회운영	12	
66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역사교육역량강화연수운영	18	
67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한국사현장답사단지원	9	
68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다문화교육지원체계구축	94	
69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탈북학생교육지원	651	
70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독서인문교육활성화	174	
71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교원안보연수강화	16	
72	민주시민교육과	특 별 교 부 금	통일동아리운영선도학교	5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73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자치활동활성화	201	
74	민주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생통일공감대학산지원	20	
75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업중단예방및공교육내 대안교육활성화	1,496	
76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업중단학생 등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사업	120	
77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지원강화	875	
78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적용학교지원	370	
79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보호관찰대상학생멘토링제도입	43	
80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어울림프로그램운영	232	
81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언어사이버폭력예방	61	
82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예방교육지원체계	32	
83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청소년경찰학교운영	130	
84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192	
85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실태조사	80	
86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체계구축	160	
87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운영	480	
88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4	
89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Wee센터별정신과자문의 지정운영	30	
90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Wee프로젝트운영지원	34	
91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피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	143	
92	학생생활교육과	특별교부금	화해분쟁조정지원	29	
93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진로교육활성화지원	1,818	
94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7,40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95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직업계고 현장중심 교육강화	204	
96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직업교육선도모델 지원	945	
97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8,301	
98	진로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고졸취업지원확대	2,251	
99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165	
100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교육지원청단위학교 스포츠클럽지원	435	
101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여학생체육활성화	40	
102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1,184	
103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	33	
104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210	
105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229	
106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중앙지원단운영	22	
107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지역교육협의체 운영지원	110	
108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진흥회	33	
109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학생건강안전관리역량강화	16	
110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e-school 운영	40	
111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수영교육활성화	2,800	
112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지원	54	
113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시설이용료	382	
114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체육연구지원및성과확산	20	
115	체육건강과	특별교부금	체육중점학급지원	299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 업 명	2018년도 예 산 안	비고
116	체 육 건 강 과	특 별 교 부 금	초등체육교과전담교사 연수지원	14	
117	체 육 건 강 과	특 별 교 부 금	수학여행지원사업	90	
118	교육정보화과	특 별 교 부 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656	
119	교육정보화과	특 별 교 부 금	영상회의시스템구축운영	104	
120	교육정보화과	특 별 교 부 금	지방교육행정통합시스템운영	755	
121	교육정보화과	특 별 교 부 금	정보보호체계강화	250	
122	참여협력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교육급여지원	18,000	
123	체 육 건 강 과	국 고 보 조 금	전국소년체육대회	363	
124	체 육 건 강 과	국 고 보 조 금	학교흡연예방교육	4,599	
125	체 육 건 강 과	국 고 보 조 금	초등스포츠강사지원	1,794	
126	참여협력담당관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교육급여지원	8,400	
127	교 육 혁 신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메이커스페이스운영	1,000	
128	교 육 혁 신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스마트스쿨구축및운영	250	
129	교 육 혁 신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혁신학교운영	1,500	
130	유 아 교 육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에듀케어운영확대	975	
131	초 등 교 육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학습준비물지원	5,265	
132	중 등 교 육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서울영어마을참가비지원	1,779	
133	중 등 교 육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1,512	
134	민주시민교육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세계시민교육환경조성	100	
135	평 생 교 육 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700	
136	학생생활교육과	광역시자치단체전입금	학교CCTV교체	1,535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업명	2018년도 예산안	비고
137	체육건강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노후급식시설개보수	6,000	
138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아름다운우리학교만들기	750	
139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친환경운동장조성지원	400	
140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에너지절감프로젝트	2,800	
141	참여협력담당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급여지원	3,600	
142	중등교육과	기타지원금	고사시행	4,088	
143	중등교육과	기타지원금	수능관리	112	
144	중등교육과	기타지원금	원서접수	545	
145	총무과	전입금	지방공무원시험관리	631	
합계				145,288	

5. 2018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현황<조례상전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A)	2017년 (B)	증감 (C=A-B)	증감률 (C/B)	비 고
계(19)	51,025	56,677	△5,652	△10.0	
일반교육경비지원사업(18)	45,923	51,909	△5,086	△10.0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4)	8,244	10,235	△1,991	△19.5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265	5,356	△91	△1.7	405천명(학생수△7천명)
2.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0	0.0	13,800명
3.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100	1,100	0	0.0	79개교
4. '서울학생, 글로벌문화시민육성'지원	100	100	△100	△50.0	60명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14)	37,679	40,774	△30,95	△7.6	
5. 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0	0.0	55개교
6. 노후 냉난방기 개선	6,757	3,500	3,257	93.1	22개교
7.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0	6,000	0	0.0	123개교
8.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00	400	0	0.0	2개교
9.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500	1,200	300	25.0	200개교
10. 유아교육 지원	975	820	155	18.9	135개 유치원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512	3,444	△1,932	△56.1	공립초 36개교
12.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750	750	0	0.0	32개교
13.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0	0.0	22개소
14.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500	0	0.0	23개교
15. 학교 CCTV교체	1,535	1,535	0	0.0	384개교
16.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신규)	2,800	0	2,800	순증	10개교
17.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신규)	100	0	100	순증	10개교
18.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신규)	250	0	250	순증	10개교
특별교육경비지원사업(1)	5,102	5,668	△566	△10.0	교육지원금 총액의 10%